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제1573호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공 고

○ 공	고 제 2 1 8 3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 공	고 제 2 1 8 7 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
○ 공	고 제 2 1 9 0 호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13
○ 공	고 제 2 1 9 5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31
○ 공	고 제 2 1 9 7 호	물품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2020년 폭염대비 그늘막 구매설치]	235
○ 공	고 제 2 2 0 2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54
○ 공	고 제 2 2 0 9 호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256
○ 공	고 제 2 2 1 4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84
○ 공	고 제 2 2 2 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1지구 소로3-11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290
○ 의회사무국공고	제 7 0 호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293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94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96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98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9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300
○ 보 건 소 공 고	제 1 1 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302

회람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18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0.11.11. ~ 2020.11.25.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21마7145외 9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번호	차량등록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292	21마7145	NEW 그랜저XG(NEW GRANDEUR XG)	임*택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길 *1, *동 **7호(만*동, 엑**트)	㈜인천 폐차사업소 /2020.7.31.	인천 남동구 (세무과, 자동차관리과, 세입징수과)
2020-00353	86어2452	이스타나-숏6밴	조*민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로 *, **1호(만*동)	㈜서울 폐차사업소 /2020.9.10.	인천 남동구 (환경보전과, 자동차관리과)
2020-00354	59나2809	에쿠스	박*제 /62****	전라남도 화순군 사*면 대**길 9*-*	㈜서울 폐차사업소 /2020.9.9.	성남 분당구 (경제교통과) 광주 남구 (세무과, 교통과) 광주 동구 (세무과) 광주 서구 (세무2과, 교통과) 김*인 광주서부경찰서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전남 화순군 (재무과)
2020-00362	46저9571	스타렉스9인오토(STAREX)	김*태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로 2*-1*, **1동 1**4호(만*동, 금***트)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2020.9.2.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환경보전과, 자동차관리과) 경기 광명시 (세정과) 밀양시 (교통행정과) 인천지방검찰청 (집행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2020-00365	37조8756	스포티지	최*혁 /9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길 1*-*1 *층 **2호(만*동)	㈜서울 폐차사업소 /2020.8.31.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인천시 (교통관리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인천남동경찰서 경기 화성시 (건설교통과) 경기 평택시 (교통행정과) 인천지방검찰청 (집행과)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 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370	33모8748	아반떼 쿠페 (AVANTE COUPE)	김*빈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로 1*, **01호(십*동, 대***빌)	㈜인천 폐차사업소 /2020.8.26.	인천 부평구 (주차지도과, 세무1과) 인천 서구 (주차관리과, 세무1과, 차량민원과)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인천부평경찰서
2020-371	57노5501	스파크1.0 DOHC	(주) 팬*** 테***지 /134811-0******	경기도 화성시 남*읍 주****5번길 2*	㈜서울 폐차사업소 /2020.9.8.	경기 화성시 (징수과,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화성서부경찰서 인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2020-00377	49오8303	싼타페	김*억 /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길 *3-2*, **1호(구*동)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9.1.	인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경기 오산시 (징수과) 대구 중구 (교통과) 서울 중구 (주차관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인천남동경찰서 인천 서구 (주차관리과)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 동구 (교통과) 인천 미추홀구 (교통민원과)
2020-00382	36서6212	AUDI A6 2.4	정*용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길 *4, *층(간석동)	㈜서울 폐차사업소 /2020.9.7.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서울 은평구 (교통지도과) 서울 송파구 (주차관리과)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인천 중구 (교통운수과) 서울 강남구 (주차관리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2020-00386	61머9207	스파크 1.0 DOHC	㈜슈***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전산업㈜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110111-4******	강*****2길 *5, *층(논*동, 광**딩)	폐차사업소 /2020.9.2.	서울 강남구 (주차관리과, 세무2과, 자동차민원과) 서울 동작구 (교통지도과) 부산 연제구 (교통행정과) 부산 진구 (주차관리과)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부산 동구 (세무과) 경남 통영시 인천 중구 (교통운수과) 서울강남경찰서 부산 강서구 (교통행정과) 부산 사하구 (교통행정과) 부산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대구 동구 (교통과) 서울 용산구 (주차관리과) 경기 김포시 (교통과) 서울 중구 (주차관리과) 인천남동경찰서 경기 오산시 (징수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187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도시관리공단 신규 및 명칭변경 위탁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추진 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사업 명칭변경(안 제23조 제10호, 제16호)

-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 -> 청년미디어타워 관리·운영사업
- 남동복지관 건물 위탁관리 ->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 목적사업 추가(안 제23조 제22호, 제23호)

-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u>2020년 11월 13일*</u>

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조직내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단축(20일->1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65,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도시관리공단 신규 및 명칭변경 위탁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추진 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명칭변경(안 제23조 제10호, 제16호)

-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청년미디어타워 관리·운영사업
- 남동복지관 건물 위탁관리->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 목적사업 추가(안 제23조 제22호, 제23호)

-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남동타워”를 “청년미디어타워”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남동복지관”을 “남동구 평생학습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3조(목적사업)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	10. 청년미디어타워 -------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남동복지관 건물 위탁관리	16. 남동구 평생학습관 ----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신 설>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190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3.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4.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
5.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 무 과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세 무 과
8.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9.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아동복지과
10.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11.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12.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환경보전과
13.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도시재생과
15.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과
16.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과

2020년 11월 12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기획예산과)
■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총무과)
■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총무과)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평생교육과)
■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체육진흥과)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1
(재무과)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 95
(세무과)

[사회도시위원회]

■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여성가족과)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123
(아동복지과)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1
(보육정책과)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5
(청소행정과)

■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87
(환경보전과)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7
(교통행정과)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 217
(도시재생과)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1
(공동주택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0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1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260명 ⇒ 1,284명 (증 24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260→1,284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55→1,279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	2	9	1	20
6급 이하 계	1,177→1,201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60명”을 “1,2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37명”을 “1,26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260명”을 “1,28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284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79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	2	9	1	20
6급 이하 계	1,201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26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 행 기 관 : 1,237명 2. (생 략) 3. 총 계 : 1,260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1,284명- ---------- 1. ---------- 1,261명 2. (현행과 같음) 3. ---------- 1,284명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 조문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본예산의 직급별 인건비(기본급, 수당) 및 물건비(직급보조비) 등 적용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6,485,982천원(2021년 ~ 2025년) 추가지급

나.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 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221,664	1,258,314	1,296,064	1,334,946	1,374,994	6,485,982
재원 조달			1,221,664	1,258,314	1,296,064	1,334,946	1,374,994	6,485,982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1,221,664	1,258,314	1,296,064	1,334,946	1,374,994	6,485,982
	지방세		1,221,664	1,258,314	1,296,064	1,334,946	1,374,994	6,485,98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3%로 가정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1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의 변경 : (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 규정 : (안 제2조)

○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 금액 규정 : (안 제5조 및 제6조)

○ 장학금의 지급 방법 규정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중·고교 학생으로 제한한 내용 삭제로 대학생 지급 가능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 통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자녀 중 종전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녀와 나머지 다른 자녀도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후순위로 조정하여 선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장학금액 : 1인당 연간 1,000천원(학기별 50만원 지급)

2) 장학생의 정원 : 연 50명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3)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2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제외

나. 추계 결과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예산 : 연 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미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통장자녀장학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지방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2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완료 및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 신청사 이전 : 구월1동, 간석2동, 서창2동
- 임시청사 이전 :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임시청사임을 병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동)
간석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7번길 39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47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간석4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75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동)
만수5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3, 5층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서창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서창동)
남촌도림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3, 3층 (남촌동)
논현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논현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 (논현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3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0.12월중 신축 공공도서관인「남동논현도서관」이 개관 운영될 계획임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변경 지정하여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구민 도서문화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도서 구입시 지역 서점 우선 이용을 통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구민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표도서관 변경(소래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 안 제5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23조제6호

○ 남동논현도서관 명칭 및 위치 추가 : 별표 1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도서관법 시행령」제15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래도서관”을 “남동논현도서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제23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대 표 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611번길 15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분관	소래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분관	서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근린공원 내)	
분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3층)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내
분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2층)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도서관 중 소래도서관을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은 ----------남동논현도서관----------.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5.(생략)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 1.~5.(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신축 구립도서관(남동논현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시설관리비 등 비용추가 발생

○ 관련조문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 운영 중인 연면적 2,092㎡ 규모의 소래도서관을 기준으로 하여 남동논현도서관의 정원 외 소요인력 인건비(정원 외 인력) 및 사업비, 시설관리비 등 예상 금액 반영

❍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 반영

- 2020년 소래도서관 운영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사업비	시설관리비
561,042	303,044	169,218	88,780

나. 추계 결과(향후 5년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575,069	589,096	603,123	617,150	631,177
인건비	310,620	318,196	325,772	333,348	340,924
사업비	173,449	177,680	181,911	186,142	190,373
시설관리비	91,000	93,220	95,440	97,660	99,880

※ 2020년 대비 2.5% 인상 적용한 14,027천원을 연도별 상승분으로 가정함

(연도별 인상분: 인건비 7,576/ 사업비 4,231/ 시설관리비 2,220)

다. 재원조달 방안

○ 인건비 : 국비 10, 구비 90

○ 사업비, 시설관리비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성 길 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21년)	2차년도(2022년)	3차년도(2023년)	4차년도(2024년)	5차년도(2025년)	계
세 입			31,062	31,820	32,578	33,336	34,094	162,890
세 출			575,069	589,096	603,123	617,150	631,177	3,015,615
재원 조달			575,069	589,096	603,123	617,150	631,177	3,015,615
의존재원	소 계		31,062	31,820	32,578	33,336	34,094	162,890
	보조금	국비	31,062	31,820	32,578	33,336	34,094	162,890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544,007	557,276	570,545	583,814	597,083	2,852,725
	지방세		544,007	557,276	570,545	583,814	597,083	2,852,725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4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례 시행일전 지방체육회 법인화 전환과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 남동구체육회의 법적성격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체육회 설립범위 확대(‘단체’ 추가) : (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인으로”를 “법인이나 단체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체육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설립) ------- 법인이나 단체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12. (생략)

제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

의안 번호	2375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17년 선정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사항으로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공동체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외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마을(지역)관리 등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 위 치 : 만수동 1번지 일원 만부마을 내

○ 사업기간 : 2018년~2021년

○ 사업규모

구분	창업인큐베이터	공영주차장1	공영주차장2	사랑방	우리집1만호
위 치	만수동 1-172외1	만수동 1-60외7	만수동 1-267외6	만수동 1-87외5	만수동 1-132일원
연면적	979.06㎡	421.89㎡	551㎡	256.72㎡	834.89㎡
규 모	지상6층	지상2층	지상2층	지상2층	지하1층/지상5층
건폐율/용적률	59.41%/305.96%	공작물	72.3%/84.27%	59.67%/115.12%	58.37%/173.36%
용 도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주차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임대주택)

○ 사업예산 : 총 61.47억원(국 50%, 시 25%, 구 25%)

[단위 : 천원]

구분		창업인큐베이터	공영주차장1	공영주차장2	사랑방	우리집1만호
시설비	설계비	-		271,000	28.000	-
	공사비	1,200,000		1,782,199	692.000	-
	부지매입비	1,000,000		540,000	309,000	271,000
감리비		-		36,201	8,570	-
시설부대비		-		5,600	3,430	-
합 계		2,200,000		2,635,000	1,041,000	271,000
		6,147,000				

○ 그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2017. 12. :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 2018. 10. :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교부
- 2020. 04. : 토지 매입 완료
- 2020. 04. : 창업인큐베이터 착공
- 2020. 09. : 공영주차장1,2 착공
- 2020. 10 : 사랑방 착공
- 2020. 12 : 공사 준공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창업인큐베이터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172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152	남동구청	2019.1.23	471,609
건 물	**연면적**	156.99㎡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연와조			
토지매입비	471,610천원				
건 축 비	2,2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창업인큐베이터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173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168	남동구청	2019.01.29	519,556
건 물	**연면적**	140.22㎡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연와조			
토지매입비	519,556천원				
건 축 비	2,2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공영주차장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260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69	남동구청	2019.11.18	127,174	
건 물	**연면적**	69.12㎡				
	구 조	시멘트부럭조				
토지매입비	127,175천원					
건 축 비	2,1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공영주차장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414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48	남동구청	2019.07.23	75,840
건 물	**연면적**				
	구 조				
토지매입비	75,840천원				
건 축 비	2,1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공영주차장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267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49	남동구청	2019.11.21	151,655
건 물	**연면적**	76.785㎡			
	구 조	벽돌조			
토지매입비	151,656천원				
건 축 비	2,10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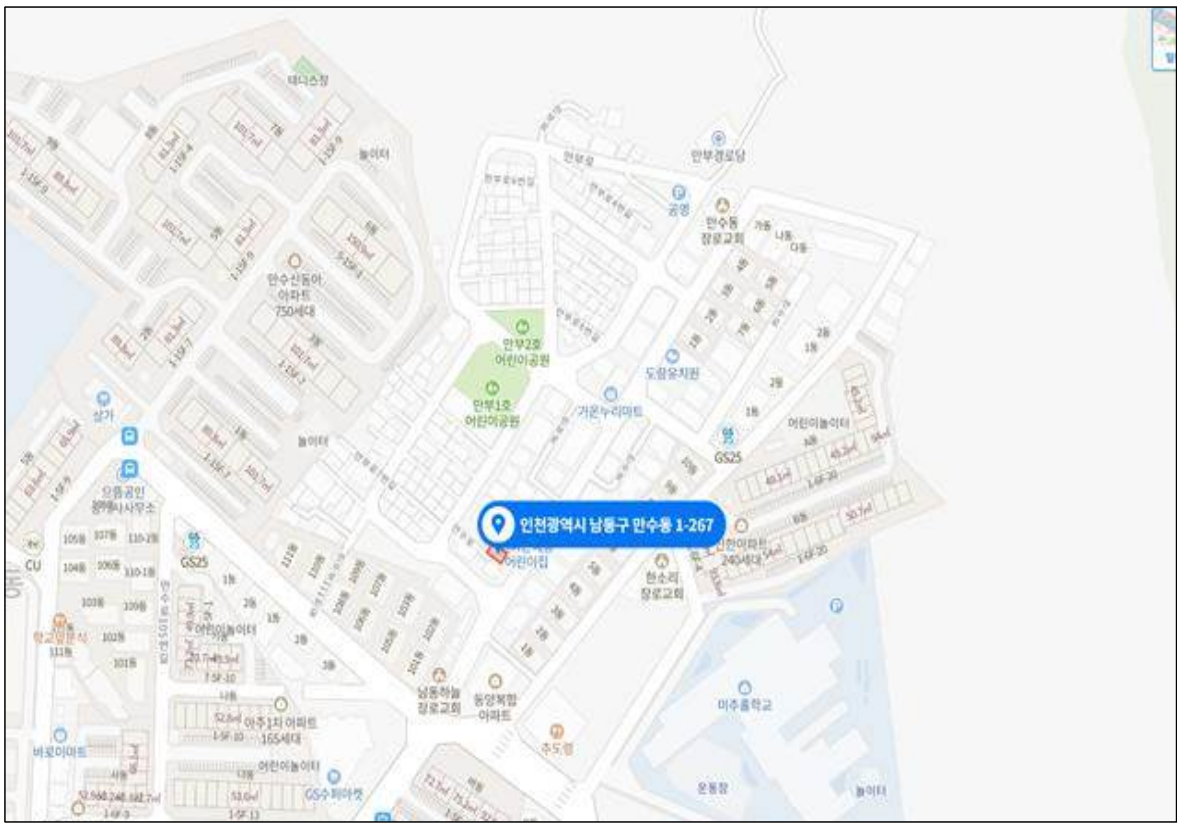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공영주차장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273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39	남동구청	2019.01.23	81,457
건 물	**연면적**	24.64㎡			
	구 조	세멘트부럭조			
토지매입비	81,457천원				
건 축 비	2,10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공영주차장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270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54	남동구청	2019.12.4	100,941	
건 물	**연면적**	37.3㎡				
	구 조	세멘트벽돌조				
토지매입비	100,941천원					
건 축 비	2,1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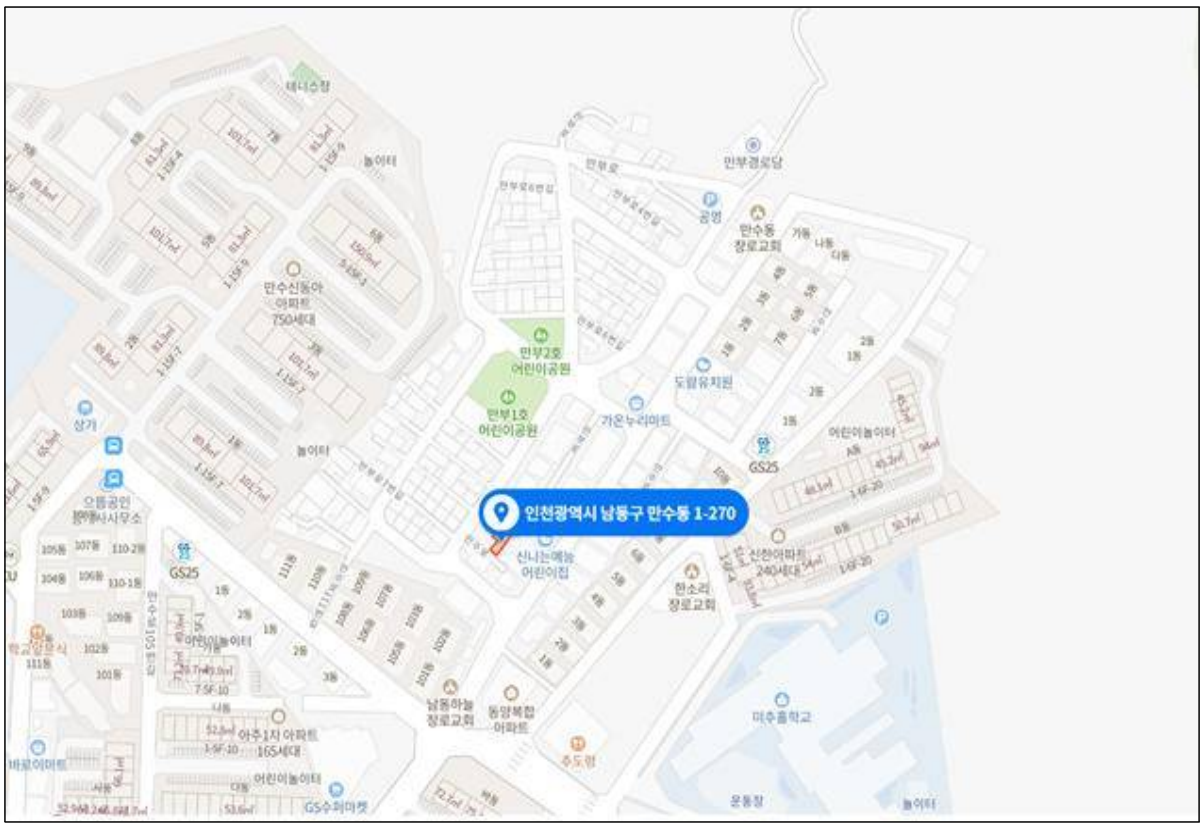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랑방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264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49	남동구청	2019.03.18	88,986
건 물	**연면적**	18.45㎡			
	구 조	세멘트부럭조			
토지매입비	88,987천원				
건 축 비	62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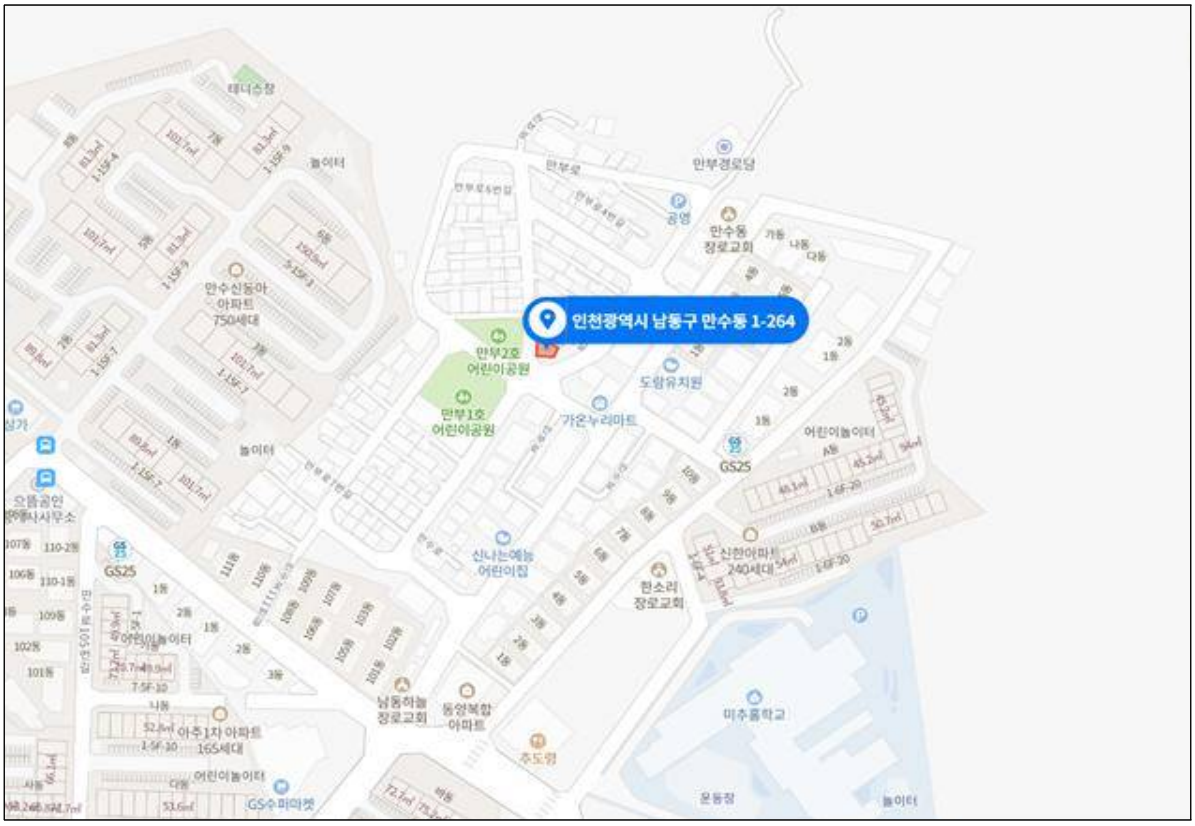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랑방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88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48	남동구청	2019.03.06	75,840
건 물	**연면적**	-			
	구 조	-			
토지매입비	75,840천원				
건 축 비	62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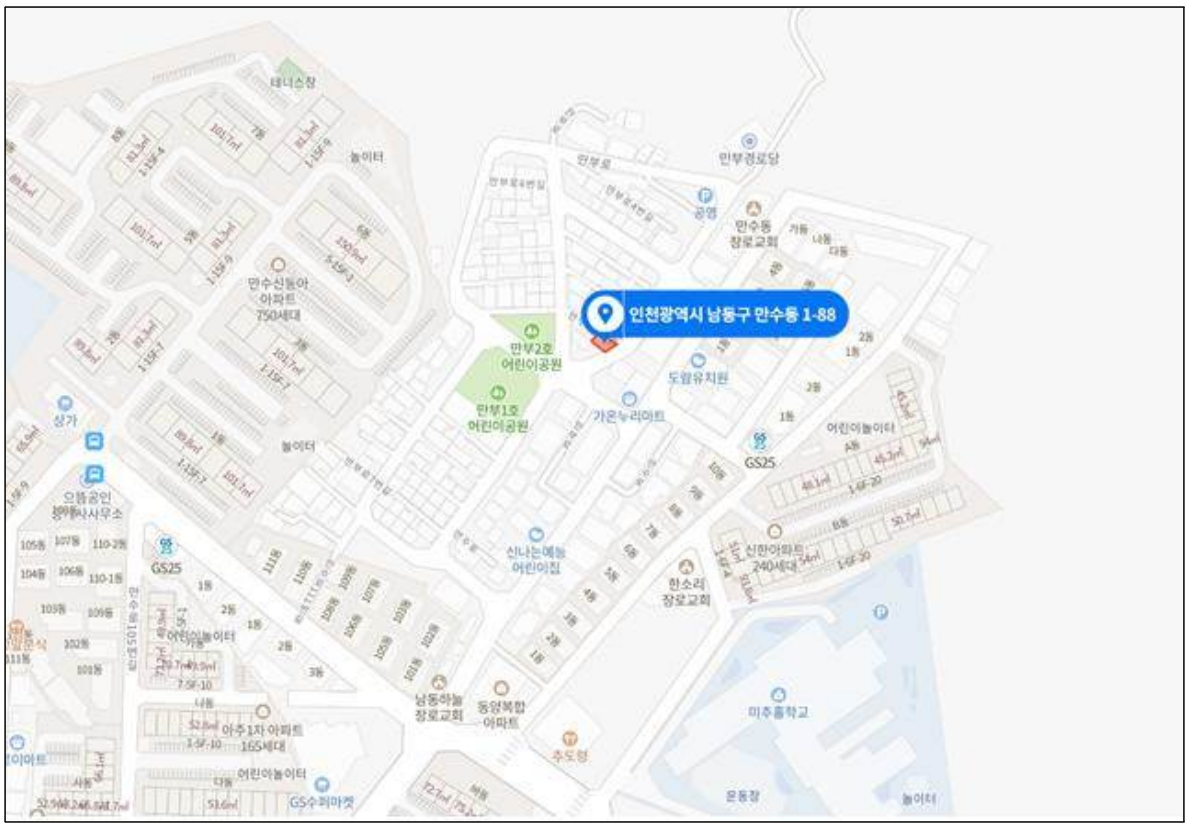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랑방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87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72	남동구청	2019.02.21	136,790
건 물	**연면적**	53.21㎡			
	구 조	시멘트부럭조			
토지매입비	136,791천원				
건 축 비	62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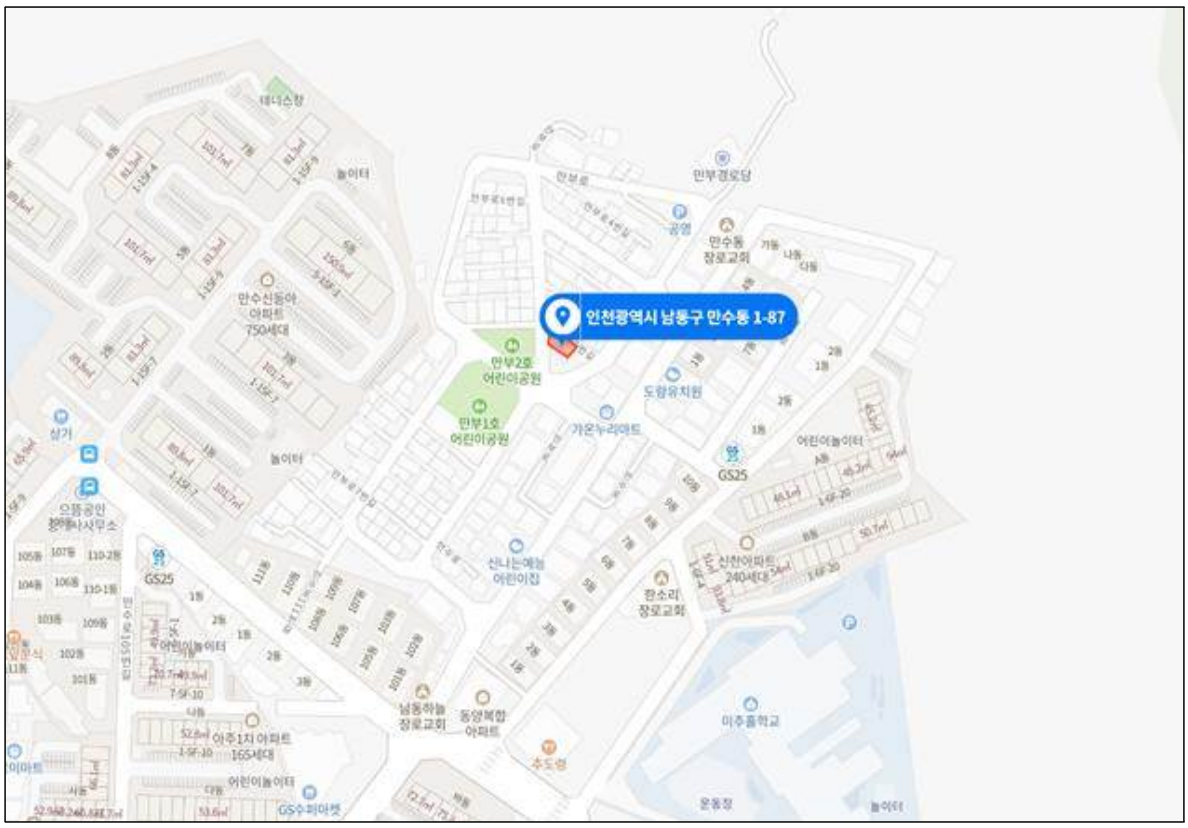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랑방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276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30	남동구청	2020.04.08	6,997
건 물	**연면적**				
	구 조				
토지매입비	6,997천원				
건 축 비	620,000천원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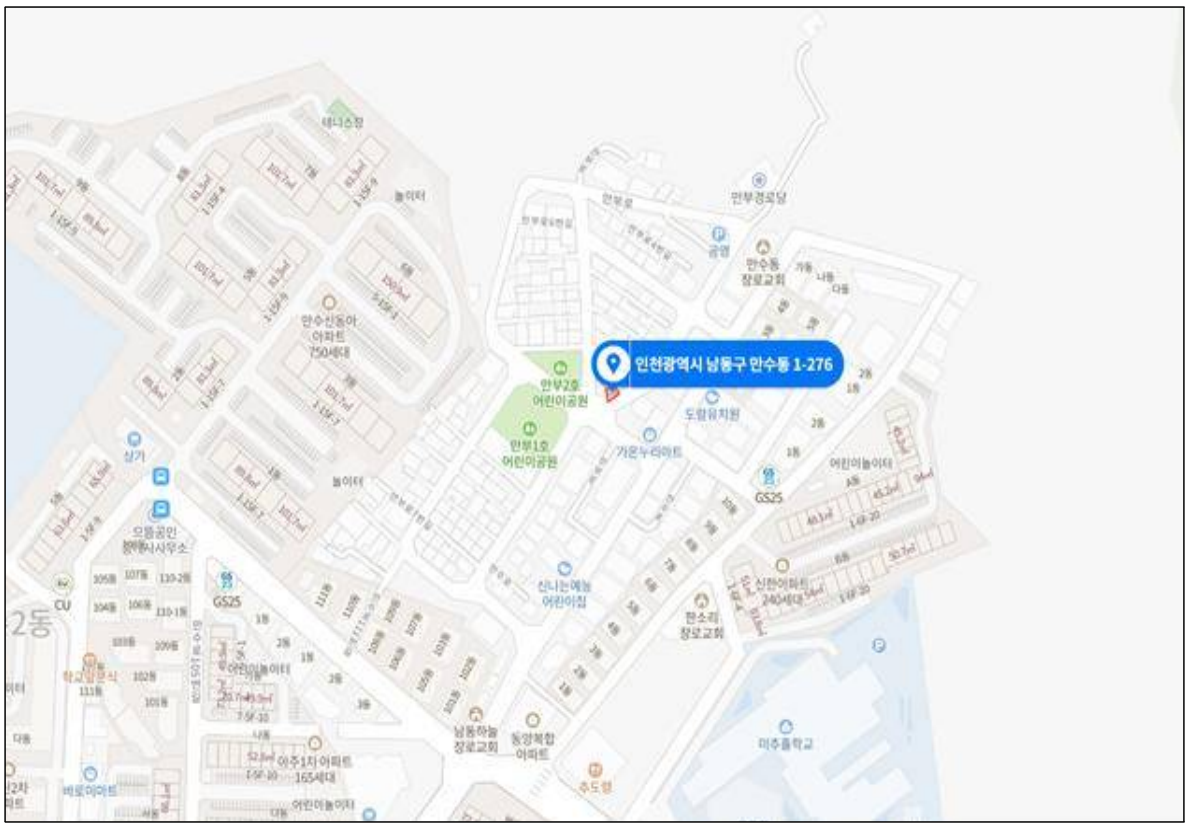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우리집1만호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142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121	남동구청	2019.06.17	109,428
건 물	**연면적**	32.24㎡			
	구 조	세멘트부럭조			
토지매입비	109,429천원				
건 축 비	-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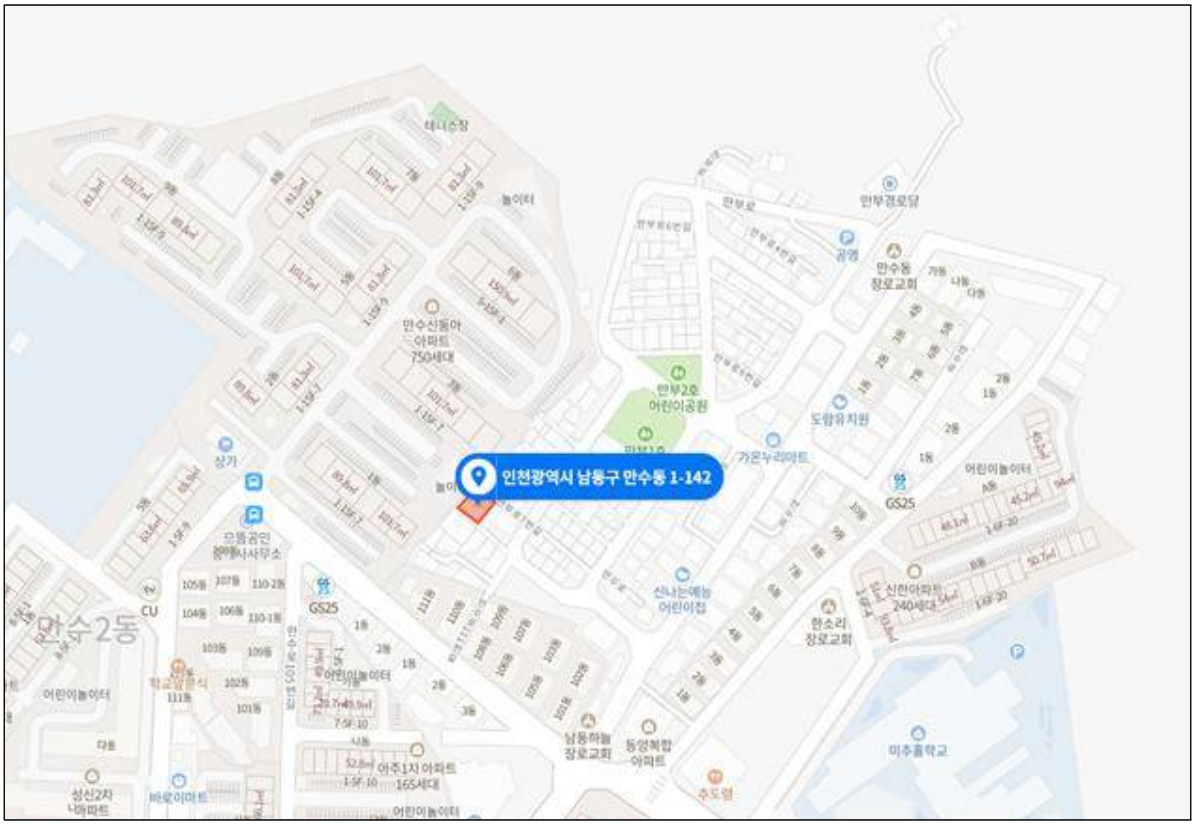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우리집1만호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만수동 1-133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예정가격(천원)**	
	대	114	남동구청	2019.10.07	146,719	
건 물	**연면적**	49.12㎡				
	구 조	세멘트부럭조				
토지매입비	146,719천원					
건 축 비	-					
사 업 기 간	2018년 ~ 2020년					

[위치도]

공유재산 (토지) 매입조서

□ 사업명 :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유자	평가예정가격		비고
						평가금액(㎡당)	금 액	
총계			1,013				2,092,992	
1	만수동 1-172	대	토지	152	이○복	3,102	471,609	
			건물	156.99				
2	만수동 1-173	대	토지	168	정○철	3,092	519,556	
			건물	140.22				
3	만수동 1-260	대	토지	69	홍○숙	1,843	127,174	
			건물	69.12				
4	만수동 1-414	대	토지	48	김○자	1,580	75,840	
			건물	-				
5	만수동 1-267	대	토지	49	김○섭	3,095	151,655	
			건물	76.785				
6	만수동 1-273	대	토지	39	이○구	2,088	81,457	
			건물	24.64				
7	만수동 1-270	대	토지	54	김○영	1,869	100,941	
			건물	37.3				
8	만수동 1-264	대	토지	49	이○근	1,816	88,986	
			건물	18.45				
9	만수동 1-88	대	토지	48	현○락	1,580	75,840	
			건물	-				
10	만수동 1-87	대	토지	72	용○효	1,899	136,790	
			건물	53.21				
11	만수동 1-276	대	토지	30	박○문 외2	233	6,997	
			건물	-				
12	만수동 1-142	대	토지	121	김○영	904	109,428	
			건물	32.24				
13	만수동 1-133	대	토지	114	장○혁	1,287	146,719	
			건물	49.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의안 번호	2375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촌동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 요구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상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 욕구로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현황

- 사 업 명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개년)
- 사업규모 : 148,025㎡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0,000백만원(국50:시25:구25)
  토지매입비 1,000백만원(구비1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계획

○ 2021. 1 ~ 6월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대상지 (남촌동 340번지) 부지매입

○ 2021. 6월 :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접수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촌동 340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274	권○녀	2014.02.26.	1,596
건 물	연 면 적				
	구 조				
토지매입비	1,000,000천원				
총 건 축 비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5년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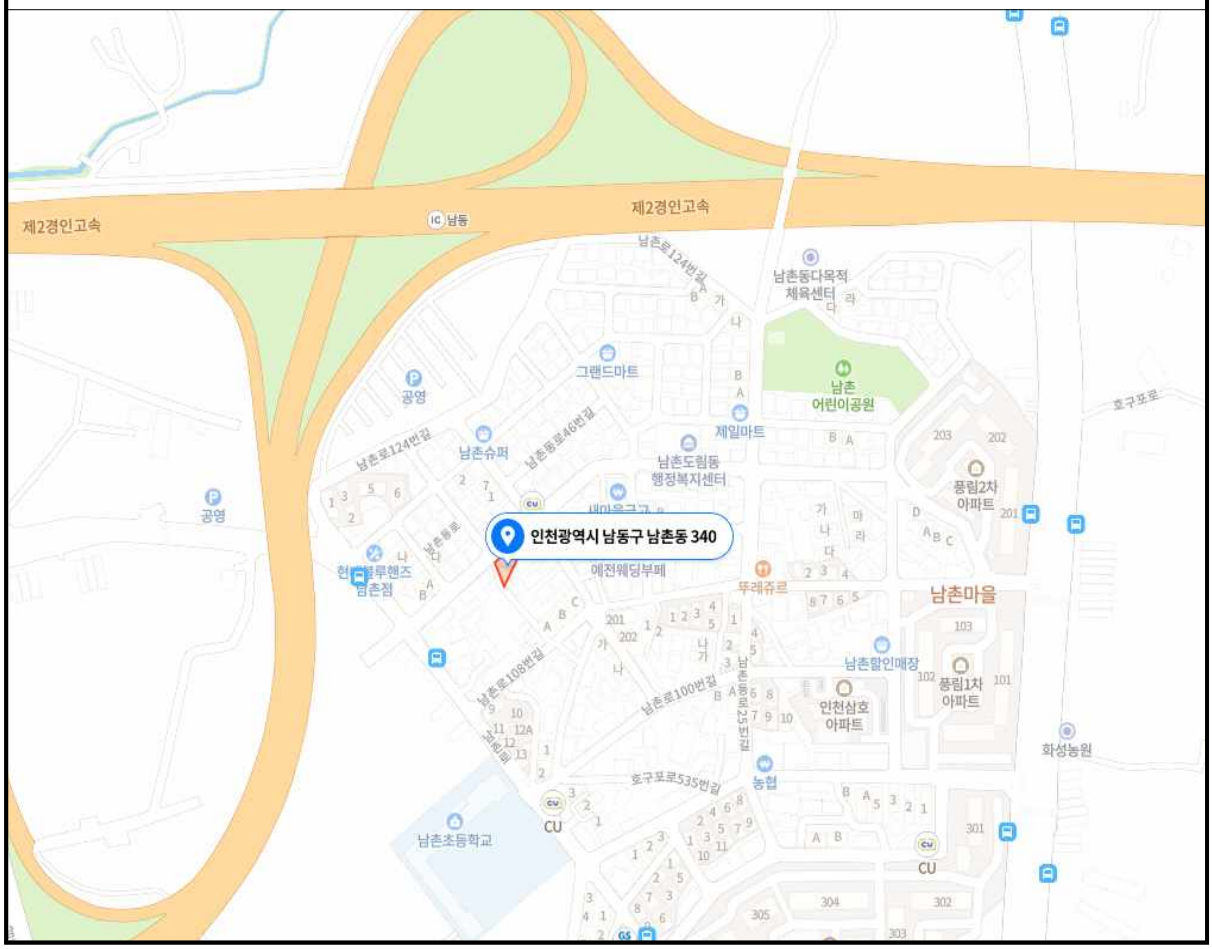

공유재산 (토지) 매입조서

□ 사업명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유자	평 가 예 정 가 격		비고
					평가금액(㎡당)	금 액	
1	남촌동 340	대	274	권○녀	1,596	1,000,000	
		이	하	여	백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

의안 번호	2375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포구어시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어시장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향상시켜 소래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내공간을 증축하여 추진코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상인들의 재정착

○ 개 요 (단위 : ㎡ / 백만원)

구 분		당 초(안)	변 경(안)	비 고
사업 규모	위 치	논현동 111-168외 2필지	논현동 111-168외 **1필지**	논현동 111-168 논현동 111-462
	규 모	· 지상2층 · 연면적 : 3,457.74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4,595.14**	
	용 도	· 판매시설(소매시장)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소요 예산	**총사업비**	20,479	**27,190**	**(증가) 6,711**
	토지매입비	14,479	**14,591**	**112**
	건 축 비	6,000	**12,599**	**6,599**
	GB훼손지복구등	-	**1,223**	**1,223**
	신축사업비	6,000	**11,376**	**5,376**
	1단계 공사비	(추정) 6,000	**8,903**	**2,903**
	2단계 공사비	-	**2,473**	**2,473**

○ 시설현황

층별	용도	세부용도	면적(㎡)
지하1층	-	· 기계실	218.42
1층	판매시설	· 시장, 쓰레기집하장, 경비실, 창고 등	2,855.3
2층	근린생활시설	· 캐주얼다이닝, 카페, 중소기업몰, 다목적실 등	1,521,42
연면적			**4,595.14**

□ 추진현황

○ 2018. 2월 : 매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2018.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19. 2월 : 실시협약 체결(남동구 ⇋ 조합)

○ 2019. 9월 : 건축허가 완료

□ 향후계획

○ 2020. 10월 : 건물 준공 및 소유권 이전(상인→남동구), 점포입주

○ 2020. 12월 : 편의시설 공사 완료

＊ 향후계획은 사정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신축 어시장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어시장 상인들과 무상사용・수익(건물:무상/토지:유상) 계약 체결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부서명 : 공영개발과]

<table>
<tr><td>위 치</td><td colspan="5">논현동 111-168 외 1필지</td></tr>
<tr><td rowspan="3">토 지</td><td>지 목</td><td>면적(㎡)</td><td>소 유 자</td><td>취득년월일</td><td>대장가격(천원)</td></tr>
<tr><td rowspan="2">잡종지</td><td>4,030</td><td rowspan="2">남동구</td><td>2018.2.13.</td><td>14,478,860</td></tr>
<tr><td>200</td><td>2008.12.30.</td><td>120,400</td></tr>
<tr><td rowspan="2">건 물</td><td>연면적</td><td colspan="4">4,595.14㎡</td></tr>
<tr><td>구 조</td><td colspan="4">철근콘크리트</td></tr>
<tr><td>토지매입비</td><td colspan="5">145,910천원</td></tr>
<tr><td>총 건축비</td><td colspan="5">125,990천원</td></tr>
<tr><td>사 업 기 간</td><td colspan="5">2017. 3월 ~ 2020. 12월</td></tr>
<tr><td>층 별 배 치</td><td colspan="5">
<table>
<tr><th>층 별</th><th>용 도</th><th>세부용도</th><th>면 적(㎡)</th><th>비 고</th></tr>
<tr><td>지하1층</td><td>-</td><td>기계실</td><td>218.42</td><td></td></tr>
<tr><td>지상1층</td><td>판매시설</td><td>어시장</td><td>2,855.3</td><td></td></tr>
<tr><td>지상2층</td><td>근린생활시설</td><td>관리실,
캐주얼다이닝 등</td><td>1,521.42</td><td></td></tr>
<tr><td>연 면 적</td><td></td><td></td><td>4,595.14</td><td></td></tr>
</table>
</td></tr>
<tr><td>소 요 예 산</td><td colspan="5">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10">총사업비</th></tr>
<tr><th rowspan="4">총 계</th><th rowspan="4">토지 매입비</th><th colspan="6">총 건축비</th></tr>
<tr><th rowspan="3">소계</th><th rowspan="3">GB 훼손지 복구 등</th><th colspan="4">신축사업비</th></tr>
<tr><th rowspan="2">소계</th><th rowspan="2">1단계 공사비 (조합)</th><th colspan="3">2단계 공사비(남동구)</th></tr>
<tr><th>소계</th><th>건축 공사</th><th>경관, 전기 공사</th><th>설계비 등</th></tr>
<tr><td>27,190</td><td>14,591</td><td>12,599</td><td>1,223</td><td>11,376</td><td>8,903</td><td>2,473</td><td>1,366</td><td>1,040</td><td>67</td></tr>
</table>
</td></tr>
</table>

2단계 공사비 세부내용

공정별		소요비용(백만원)	비고
건축공사	골조공사	80	소래철교 연결다리 설치
	외부마감	400	바닥마감, 야외 데크 (테라스, 공연장)
	족욕시설	140	30㎡(20m x 1.5m)
	내부마감	666	2층 인테리어 및 공조설비
	조경식재	80	갈대, 수수꽃다리 등
	소 계	**1,366**	
경관·전기 공사	경관조명	500	난간, 고보조명, 벽부등, 화단
	G-GLASS	400	
	전기통신	140	일반 배선
	소 계	**1,040**	
설계비 등	설계비	60	13억원*5%
	부대비	7	
	소 계	**67**	

[위치도]

공유재산 (토지)매입조서

□ 사업명 :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유자	평 가 가 격		비고
					평가금액(㎡당)	금 액	
1	논현동 111-168 외 1필지	잡종지	4,230	남동구		14,590,542	
		이	하	여	백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의안 번호	2375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더 많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구민들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체육시설 등) 조성

○ 사 업 명 :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 사업기간 : 2021년~2022년

○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

- 2,543백만원(지장물 80백만원 포함)

○ 기준가격 명세

연 번	지 번	지목	소유자	면적(㎡)	보상가
1	수산동 2-27	전	김○빈	2,194	**1,602백만원**
2	수산동 5-12	천	김○빈	45	**15 백만원** (340,000원)
3	수산동 2-9	전	신○영	124	**90 백만원**
4	수산동 2-8	전	황○홍	1,035	**756백만원**
소 계				**3,398**	**2,463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의매수)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부서명 : 공영개발과]

위 치	수산동 2-27				
토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전	2,194	김○빈	2010.9.15.	715,244
건 물	연 면 적				
	구 조				
토지매입비	1,601,620천원				
총 건 축 비	-				
사 업 기 간	2021~2022				
[위 치 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부서명 : 공영개발과]

위 치	수산동 5-12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천	45	김○빈	2011.12.26.	6,818
건 물	연 면 적				
	구 조				
토지매입비	15,300천원				
총 건 축 비	-				
사 업 기 간	2021년~2022년				
[위 치 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부서명 : 공영개발과]

위 치	수산동 2-9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대장가격(천원)
	전	124	신○영	1982.8.10.	40,424
건 물	연 면 적				
	구 조				
토지매입비	90,520천원				
총 건 축 비	-				
사 업 기 간	2021년~2022년				
[위 치 도]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부서명 : 공영개발과]

위 치	수산동 2-8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전	1,035	황○홍	2018.3.22.	337,410
건 물	연 면 적				
	구 조				
토지매입비	755,550천원				
총 건 축 비					
사 업 기 간	2021년~2022년				
[위 치 도]					

공유재산 (토지) 매입조서

□ 사업명 :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유자	평 가 예 정 가 격		비고
					평가금액(㎡당)	금 액	
총계			3,398			2,542,990	
1	수산동 2-27	전	2,194	김○빈	730	1,601,620	
2	수산동 5-12	천	45	김○빈	340	15,300	
3	수산동 2-9	전	124	신○영	730	90,520	
4	수산동 2-8	전	1,035	황○홍	730	755,550	
						80,000	지장물
		이	하	여	백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의안 번호	2375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시장 방문고객 편의 증진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
○ 고객지원센터 신축으로 시장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위 치 : 구월동 117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2년)
○ 규 모 : 지상 4층(부지면적258.3㎡ / 연면적528.84㎡)
-지상1층 : 고객쉼터,공동배송센터 등(150.8㎡)
-지상2층 : 상인회사무실,소회의실 등(150.8㎡)
-지상3층 : 문화센터,상인교육장 등(150.8㎡)
-지상4층 : 루프탑카페,행사장 등(76.4㎡)
○ 사 업 비 : 23억원(시비 80%, 구비 20%)
※ 1단계 : 1,400,000천원(2021년 부지매입비)
2단계 : 897,788천원(2022년 공사비)
○ 부지매입 및 예정현황

지 번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공시지가 (원/㎡)	예정가격 (백만원)	비고
구월동 1175-5	258.3	103.68	1,995,000	1,400	

※ 2021년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 철거후 2022년 건축공사 예정

○ 계약방법 : 토지매입

□ 추진계획

○ 2021년 2월~9월 : 감정평가 및 보상
○ 2022년 1월~6월 :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 2022년 7월~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부서명 : 생활경제과]

위 치	구월동 1175-5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258.3	문○황외 1명	-	1,400,000
건 물	연 면 적	103.68			
	구 조	T50조립식판넬			
토지매입비	1,400,000천원				
총 건 축 비	9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21년 1월~2022년 12월				
[위 치 도]					

공유재산 (토지) 매입조서

□ 사업명 :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유자	평 가 예 정 가 격		비고
					평가금액(㎡당)	금 액	
1	구월동 1175-5	대	토지:258.3 건물:103.68	문○황 외 1명	542	1,400,000	
		이	하	여	백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의안 번호	2375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원도심 만수산에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교통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하여 토지(임야) 매입 필요

□ 주요내용

○ 202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사업(무장애나눔길) 공모당선

- 사 업 명 :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사업목적 및 용도 :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 사업기간 : 2021.01. ~ 2021.12.
- 소요예산 : 총 35억원 (녹색자금 10억, 특교금 10억, 구비 15억)
- 사업규모 : 2021.01. ~ 2021.12.
- 계약방법 : 공개입찰
- 사업내용 : 무장애나눔길 2.6km, 야간조명 등

○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한 토지(임야) 매입

연번	지번	면적	공시지가(㎡)	탁상감정	매입 예상금액		소유자
계		**총193,152㎡**		**약120억원**	**약15억원**		김○식
❶	만수동 산1-2	187,970㎡	19,500원	약115억	**금9.99억원 협의**		김○식
❷	만수동 산1-32	2,588㎡	약19,500원	약1.5억	약1.5억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	김○식
❸	만수동 1-428	1,324㎡	38,800원	약1.6억	약1.6억		김○식
❹	만수동 1-429	1,270㎡	38,800원	약1.5억	약1.5억		김○식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부서명 : 공원녹지과]

위 치	남동구 만수동 산1-2 일원					
토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만수동 산1-2	임	187,970	김○식	2003.05.29.	3,665,415
	만수동 산1-32	임	2,588	김○식	2003.05.29.	50,466
	만수동 1-428	임	1,324	김○식	2003.05.29.	51,371
	만수동 1-429	임	1,270	김○식	2003.05.29.	49,276
건 물		연면적	-			
		구 조	-			
토지매입비		약 1,500,000천원				
건 축 비		-				
사업기간		2021.01.~2021.12.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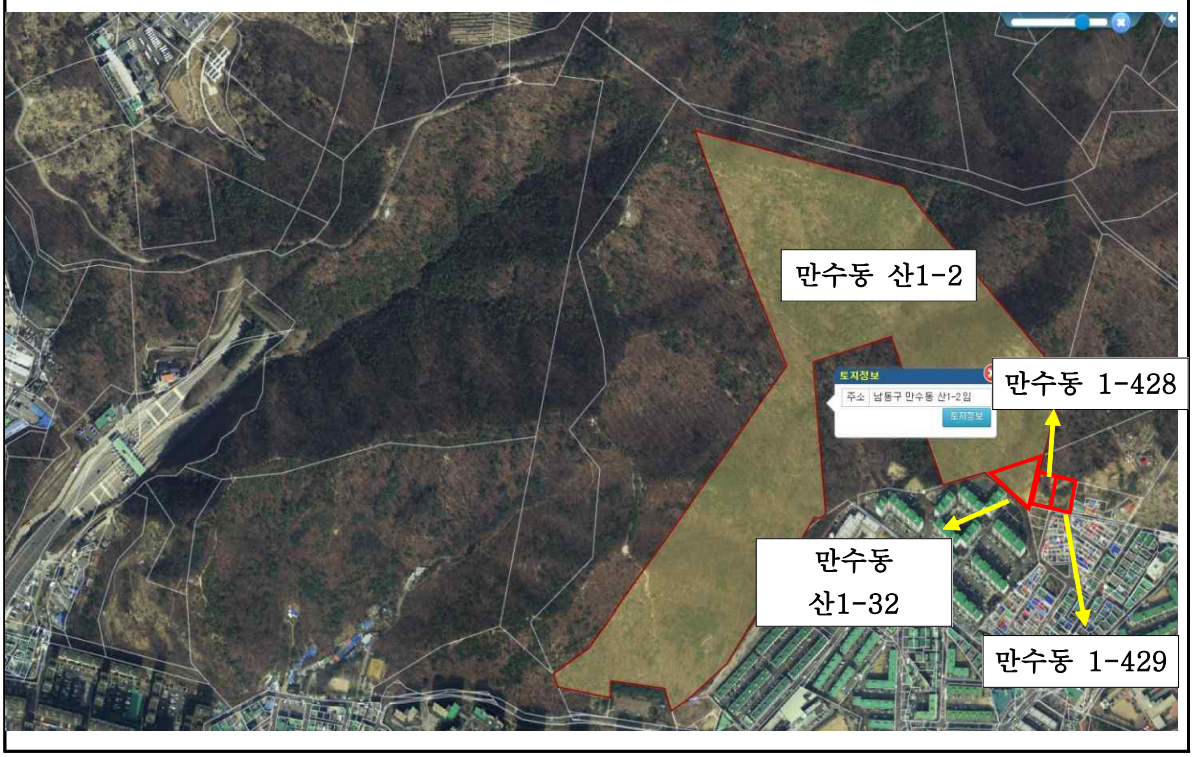

공유재산 (토지) 매입조서

☐ 사업명 :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유자	대 장 가 격		비고
					기준금액(㎡당)	금 액	
총계			193,152	김○식		3,816,528	
1	만수동 산1-2	임	187,970	김○식	19,500	3,665,415	
2	만수동 산1-32	임	2,588	김○식	19,500	50,466	
3	만수동 1-428	임	1,324	김○식	38,800	51,371	
4	만수동 1-429	임	1,270	김○식	38,800	49,276	
		이	하	여	백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현황)

[남동구] [단위 : ㎡,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재지	건수	면 적	공시지가	예정가격	사유	비고
합 계			24	토지 198,095.3 건물 4,595.14				
기본계획	만부마을 뉴딜사업	만수동 1-172 외 12필지	13	토지 1,013		2,092,992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촌동 340	1	토지 274	1,596	1,000,000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논현동 111-168 외 1필지	1	건물 4,595.14	-	8,903,000	소래포구 상인 재정착	기부 채납
	남동어울림 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수산동 2-27 외 3필지	4	토지 3,398		2,542,990	매입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구월동 1175-5	1	토지 258.3	1,995	1,400,000	시장방문고객 편의 및 사장경쟁력 강화	부지매입 및 설치공사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만수동 산1-2 외 3필지	4	토지 193,152		1,500,000	무장애나눔길 조성	
			이	하	여	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3	198,095.3	8,535,982				23	198,095.3	8,535,982	
		건물										
		기타	1	4,595.14	8,903,000				1	4,595.14	8,903,000	
	1. 매 입	토지	23	198,095.3	8,535,982				23	198,095.3	8,535,982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1	4,595.14	8,903,000				1	4,595.14	8,903,000	기부채납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취득수량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	만수동 1-172	152	152	471,609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창업인큐베이터)	이○복	
2	대	만수동 1-173	168	168	519,556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창업인큐베이터)	정○철	
3	대	만수동 1-260	69	69	127,174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공영주차장)	홍○숙	
4	대	만수동 1-414	48	48	75,840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공영주차장)	김○자	
5	대	만수동 1-267	49	49	151,655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공영주차장)	김○섭	
6	대	만수동 1-273	39	39	81,457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공영주차장)	이○구	
7	대	만수동 1-270	54	54	100,941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공영주차장)	김○영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취득수량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8	대	만수동 1-264	49	49	88,986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랑방)	이○근	
9	대	만수동 1-88	48	48	75,840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랑방)	현○락	
10	대	만수동 1-87	72	72	136,790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랑방)	용○효	
11	대	만수동 1-276	30	30	6,997	2020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랑방)	박○문 박○종 박○석	
12	대	만수동 1-142	121	121	109,428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우리집1만호)	김○영	
13	대	만수동 1-133	114	114	146,719	2019	만부마을뉴딜사업 도새재생 기반시설 조성 (우리집1만호)	장○혁	
14	대	남촌동 340	274	274	1,000,000	2021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권○녀	
15	잡	논현동 111-168 111-462	4,230	4,595.14 (건물)	8,903	2020	소래포구 상인 기부채납	소○포○상○회	
16	전	수산동 2-27번지	2,194	2,194	1,601,620	2021	체육시설 조성	김○빈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취득수량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7	전	수산동 5-12번지	45	45	15,300	2021	체육시설 조성	김○빈	
18	전	수산동 2-9번지	124	124	90,520	2021	체육시설 조성	신○영	
19	전	수산동 2-8번지	1,035	1,035	755,500	2021	체육시설 조성	황○홍	
20	대	구월동 1175-5	토지:258.3 건물:103.68	토지:258.3 건물:103.68	1,400,000	2021	구월도매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신축 부지 매입	문○황 외 1	고객센터 부지매입
21	임	만수동 산1-2	187,970	187,970	999,000 (탁상115억)	2021 상반기	무장애나눔길 조성	김○식	사전협의
22	임	만수동 산1-32	2,588	2,588	150,000	2021 상반기	무장애나눔길 조성	김○식	탁상감정가
23	임	만수동 1-428	1,324	1,324	160,000	2021 상반기	무장애나눔길 조성	김○식	탁상감정가
24	임	만수동 1-429	1,270	1,270	150,000	2021 상반기	무장애나눔길 조성	김○식	탁상감정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2376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및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써,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 연 금 : 17,083천원

※출연금 산정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31,413,017천원) X 1.3/10,000

(단위:천원)

'19년 결산 지방세	'19년 결산 보통세			'20년 정산액	'21년 출연금
	소계(ⓐ+ⓑ)	현년도ⓐ	과년도ⓑ		
131,413,017	131,413,017	128,810,902	2,602,115	-	**17,083**

○ 출연방식 : 현금출연 ('21.3.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계좌입금)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내 용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17,083천원

□ 참고 사항

○ 관계법령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17,803천원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과장 김 순 철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 회 도 시 위 원 회]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7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명칭 및 개정사항 반영
○ 성인지 통계 작성에 관한 조항 신설
○ 본 조례 제정 이래 운용하지 않는 양성평등기금에 관련 조항 삭제하고,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로 그 기능을 대체

□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안 제3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2항, 제22조
○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 조항 신설 : 안 제10조의2
○ 위원회 구성 규정의 단서 조항 신설 : 안 제12조제2항
○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 대체 조항 신설 및 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안 제23조~제33조
○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 삭제 : 안 제23조~제24조, 제34조~제4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제4조, 제11조의2, 제17조, 제21조, 제2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모든 영역”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협력”을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7조 앞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삭제한다.

제9조 앞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중 “영유아 교육”을 “영유아 보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앞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문하고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자문·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관련 법령---------- ----------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 ---------- ---------- ---------- ---------- ----------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 략)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구민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령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삭 제>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	<삭 제>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성별영향평가----------.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지방회계법」 제18조----------.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② ---------- 성별영향평가 -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신 설>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 ---------- 영유아 보육, - ---------- ---------- ---------- ---------- ---------- ----------.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 ---------- ---------- 성별영향평가----------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삭 제>
제23조(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설치) ①---------- ---------- ----------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 ---------- ----------.
<신 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24조(기능) ① ---------- --------- 사항을 자문·심의

의 자문에 응한다.	한다.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남동구 여성단체 대표		
제26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	<삭 제>	

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삭 제>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삭 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삭 제>	
제34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삭 제>	

하는 사업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삭 제>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0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0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성인지 통계집 발간'** 비용으로 40,000천원 산정되어 있으며, 최초 발간인 2020년도 성인지 통계집 발간 비용보다 추후 발간되는 성인지 통계집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11조의2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1. 20.] 제21조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378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위탁시설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현 위탁법인	비 고
남동구아동복지 종합센터	남동구 용천로 208, 2층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661.16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	재위탁

※ 위탁계약 기간은 2018. 1. 1. ~ 2022. 12. 31.이었으나, 수탁자의 위탁해지 희망에 따라 2020. 12. 31.까지 위탁 예정, 이후 위탁운영자 재선정 필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2021. 1. 1. ~ 2025. 12.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내용
- 위탁기간, 위탁시설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위탁조건 및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1,644,390천원(5년)(시비 50%, 구비 50%)

□ 보고사항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보고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선정 계획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0년 인천광역시 아동분야 사업안내 (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1년 ~ 2025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1년 ~ 2025년 (5년)
- 발생비용 : 1,644,39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822,195천원, 구비 822,195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장 심 연 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58,328	163,498	165,133	166,784	168,452	822,195
	시비보조금		158,328	163,498	165,133	166,784	168,452	822,195
세 출			316,656	326,996	330,266	333,568	336,904	1,644,390
	아동복지종합 센터 지원		316,656	326,996	330,266	333,568	336,904	1,644,390
재원 조달			316,656	326,996	330,266	333,568	336,904	1,644,390
의존 재원	소 계		158,328	163,498	165,133	166,784	168,452	822,195
	보조금	국비						
		시비	158,328	163,498	165,133	166,784	168,452	822,195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58,328	163,498	165,133	166,784	168,452	822,195
	지방세		158,328	163,498	165,133	166,784	168,452	822,195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0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안내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천원)
계	인건비(종사자 5명), 운영비		316,656
종사자 인건비	[월급여] - 원장:5,049,000원×1명×12월 - 과장:3,821,000원×1명×12월 - 사회복지사:2,438,000원×1명×12월 - 사회복지사:2,231,000원×1명×12월 - 임상심리상담원:2,055,000원×1명×12월 [가족수당] 2,640천원 [명절휴가비] 21,569천원 [연장근로수당] 7,239천원 [4대보험] 20,359천원 [퇴직적립금] 18,177천원	시설장:1명 (30호봉) 과장:1명 (19호봉) 사회복지사:2명 (11호봉,6호봉) 임상심리상담원:1명 (1호봉)	256,656
운 영 비	[운영비] - 15,000천원 × 4분기		60,000

[붙임 1]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Ⅱ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시설현황

❍ 시설명칭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 소 재 지 : 남동구 용천로 208, 2층(간석동, 사회복지회관)

❍ 주요사업 : 아동상담 및 치료사업 등 아동복지 증진 사업

❍ 규 모 : 661.16㎡(치료실, 상담실, 놀이실, 독서실)

계	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대기실(아동도서실)	사무실	주 방	기 타(수유실, 화장실 등)
661.16㎡	129.36㎡	36.56㎡	64.49㎡	150㎡	51㎡	24㎡	205.75㎡

❍ 現 위탁법인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

❍ 종 사 자 수 : 5명

❍ 예 산 지 원 : 320,554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시비 50%, 구비50%)

Ⅳ 그 동안의 위탁 현황

□ 제1차 위탁 현황

❍ 계약기간 : 3년(2008. 8. 1 ~ 2011. 7. 31)

❍ 위탁방식 : 공개모집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제2차 위탁 현황

❍ 계약기간 : 3년(2011. 8. 1 ~ 2014. 7. 31)

❍ 위탁방식 :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거 재계약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제3차 위탁 현황

❍ 계약기간 : 3년(2014. 8. 1 ~ 2017. 7. 31)

❍ 위탁방식 : 공개모집

❍ 위탁법인 : 사단법인 웰브

□ 제4차 위탁 현황

❍ 계약기간 : 5년(2018. 1. 1 ~ 2022. 12. 31)

※ 수탁자 해지 요청에 따라 2020. 12. 31.까지 위탁

❍ 위탁방식 : 공개모집

❍ 위탁법인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

Ⅴ 세부추진계획

□ 위탁방식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제6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대상의 공개모집으로 능력 있는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탁운영법인 선정계획

❍ 위탁운영기간 : 5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 2021. 1. 1 ~ 2025. 12. 31

❍ 위탁운영 법인 모집 및 선정 방침

- 모 집 : 공고에 의한 희망 법인 모집 -【붙임 1】
- 선 정 : 자체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법인 결정
  ※ 심의위원 선정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모집결과 1개 기관 신청시 재모집 공고

❍ 위탁법인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법인정관상 표기)으로 설립된 법인

※ 모집결과 신청기관 없을시 신청자격을 전국 법인으로 확대 예정

- 법령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해지 법인 신청 불가

❍ 시설장의 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에 따른 종사자 자격 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탁법인 선정 추진 일정(안)

구 분	일 정	비 고
위탁계획 수립	2020. 10. 30.(금)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0. 11월중	2020년 11월중 정례회 상정
모집공고 및 홍보	2020. 11. 5.(목) ~ 11. 19.(목) (15일간)	
신청서 접수	2020. 11. 20.(금) ~ 11. 24.(화) (3일간)	

구 분	일 정	비 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2020. 11. 20.(금)까지	- 위원 구성 · 당연직:3명(부구청장 외 2명) · 위촉직:4명(민간 아동복지 전문가)
위탁운영법인 선정	2020. 12. 11.(금)까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위탁운영협약 체결	2020. 12. 18(금)	선정 법인 대표 참석
위탁법인 업무 인수인계	2020 12. 21(월) ~ 12. 31(목) (11일간)	
위탁개시	2021. 1. 1(금)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구성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7인(위원장 포함)

- 당연직 : 3명 (관련공무원)
- 위촉직 : 4명 (아동복지단체 및 아동복지 전문가 등)

구 분	인원	선 정 기 준	비 고
계	7명		
공 무 원	3명	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당연직
아동복지 전문가	4명	사회복지시설장 및 민간 전문가	위촉직

※ 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위원 추천 의뢰

- 추천의뢰 : 아동복지단체, 아동복지 전문가 등 심사위원 추천의뢰 (비공개)
- 추천기한 : 2020. 11. 20.(금)까지
- 승낙 및 서약서 취합 후 심의위원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0. 12. 11.(금)까지 (일정 추후협의 결정)
- 참석대상 : 7명
- 심의내용
  ▹ 위탁법인 선정 심의기준 및 채점표(안) 심의
  ▹ 위탁운영법인 확정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평가

□ 선정항목 및 비율(안)

구 분	계	법인의 공신력	재정 능력	운영능력	책임자 적정성	사업수행 능　　력
배 점	100	10	15	20	20	35

※ 감점(최대5점) : 비위사실(행정처분) 있을 경우

□ 선정 방법(안)

❍ 작성된 신청법인의 심의자료를 심의위원이 검토

❍ 심사 시작 前에 심사기준 및 배점표, 선정방법 등 심의 및 결정

❍ 심의위원별로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채점 실시

❍ 심의위원 각자가 채점표에 신청 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

❍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법인 선정

□ 신청법인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접수순)

❍ 개 최 일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시

❍ 발 표 자 : 1명 (단, 참석은 법인대표 및 센터장 예정자)

※ 발표는 접수번호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센터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 발표방법 : 종이문서(A4, 15장내외) 작성 발표

❍ 발표시간 : 20분 이내(법인발표 : 10분, 위원 질의응답 : 10분)

□ 심의절차

1 **선정심의 방법안내**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설명 ⇒ 간사
⇩	
2 **선정방법 및 심사표 결정**	·참석위원 협의하에 선정방법, 심사기준 및 배점표 결정 ⇒ 위원 모두
⇩	
3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법인대표 또는 센터장 예정자로부터 10분간 사업계획 보고 청취 ·법인대표 및 센터장예정자에게 사업 비전제시 등 위원 질의응답 실시
⇩	
4 **채점 실시**	·심사기준표에 의거 신청법인별 채점 및 합산 ⇒ 위원 모두
⇩	
5 **채점결과 검산·확인**	·심의위원 개인별 채점표 검산 및 확인 ⇒ 간사
⇩	
6 **심사의결서 서명**	·최종 집계된 심사결과 위원 모두 서명확인 ⇒ 위원 모두
⇩	
7 **선정법인 발표**	·선정법인 발표 ⇒ 위원장

□ 위탁법인 선정

❍ 위탁법인 선정결과 통보 : 2020. 12. 11.(금)까지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선정된 위탁법인과 협약 체결 : 2020. 12. 18.(금)

Ⅵ 향후일정 (안)

❍ 공고 및 홍보 : 2020. 11. 5.(목) ~ 11. 19.(목)

❍ 위탁 신청서 접수 : 2020. 11. 20.(금) ~ 11. 24.(화)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보고: 2020. 11월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0. 12. 11.(금)까지

❍ 위탁운영 협약체결 : 2020. 12. 18.(금)

❍ 위탁법인업무 인수인계 : 2020. 12. 21(월) ~ 12. 31(목)

❍ 위탁 개시 : 2021. 1. 1(금)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79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단위:㎡/명)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연면적	정원	비 고
개나리	백범로124번길 43 216동 102호(만수동, 주공아파트)	88.81	14	
가온사랑	선수촌로 27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6단지)	254.93	45	
구월나래	선수촌로 56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5단지)	243.42	45	
늘해랑	선수촌공원로 85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1단지)	239.35	47	
빛솔	남동구 선수촌로 8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8단지)	269.40	45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내용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위탁 목적 및 시설 사항
- 어린이집 위탁관리 기간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12,538,187천원(5년간)

□ 동의 사항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0년 보육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1년 ~ 2025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1년 ~ 2025년(5년)
- 발생비용 : 12,538,187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10,923,976천원, 구비1,614,211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 미 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075,741	2,128,657	2,183,160	2,239,298	2,297,120	10,923,976
국시비보조금			2,075,741	2,128,657	2,183,160	2,239,298	2,297,120	10,923,976
세 출			2,386,042	2,445,043	2,505,814	2,568,408	2,632,880	12,538,18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2,386,042	2,445,043	2,505,814	2,568,408	2,632,880	12,538,187
재원 조달			2,386,042	2,445,043	2,505,814	2,568,408	2,632,880	12,538,187
의존재원	소 계		2,075,741	2,128,657	2,183,160	2,239,298	2,297,120	10,923,976
	보조금	국비	1,354,512	1,393,228	1,433,106	1,474,180	1,516,486	7,171,512
		시비	721,229	735,429	750,054	765,118	780,634	3,752,46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310,301	316,386	322,654	329,110	335,760	1,614,211
	지방세		310,301	316,386	322,654	329,110	335,760	1,614,211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0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천원)
계		아동인원 196명, 원장 5명, 조리사 5명 교사 39명(영아반,야간연장 36명, 유아반 3명)		2,328,759
보육교직원 인건비		- 원장:3,298,900원×80%×5명×12월 - 교사:2,075,000원×80%×36명×12월 - 교사:2,075,000원×30%×3명×12월 - 조리사:1,903,400원×100%×5명×12월 -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 182,005천원 (13명 총 인건비 9.65% 적용)	원장 17호봉 교사 5호봉 조리사 7호봉	1,194,079
어린이집 환경개선	교재 교구비	- 60인 이하 : 611천원×4개소 - 20인 이하 : 489천원×1개소	시설규모별 지원	2,933
	냉난방비	- 60인 이하 : 767천원×4개소 - 20인 이하 : 341천원×1개소		3,409
	보육장비비	- 60인 이하 : 301천원×4개소 - 20인 이하 : 270천원×1개소		1,474
교사수당	담임교사 지원비	- 교사 : 240천원×36명×12월	영아반교사 야간연장	103,680
	누리과정 교사수당	- 교사 : 360천원×3명×12월	유아반교사	12,960
	처우 개선비	- 영아교사,야간연장 : 170천원×36명×12월 - 유아교사 : 90천원×3명×12월 - 원 장 : 310천원×5명×12월	원장 및 교사	95,280
	격려수당	- 교사 : 80천원×39명×12월	교사	37,440
	원장학습 운영비	- 원장 : 50천원×5명×12월	원장	3,000
	교직원 명절수당	- 교사 : 50천원×34명×2월	교사	3,400
영유아보육료		- 영아(0세) 470천원×27명×12월 - 영아(1세) 414천원×57명×12월 - 영아(2세) 343천원×68명×12월 - 유아(3~5세) 240천원×44명×12월 - 누리과정운영비 55천원×44명×12월	연령별 지원	871,104

[붙임 1]

Ⅰ 관련근거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Ⅱ 추진방향

1.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2.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3.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세부추진계획

□ 위탁대상 현황

(단위:㎡/명)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연면적	정원	취약보육	비 고
개나리	백범로124번길 43, 216동 102호(만수동, 주공아파트)	88.81	14	2개	2021.2.28. 위탁해지
가온사랑	선수촌로 27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6단지)	254.93	45	2개	2021.05.16. 위탁만료
구월나래	선수촌로 56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5단지)	243.42	45	2개	2021.05.16. 위탁만료
늘해랑	선수촌공원로 85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1단지)	239.35	47	2개	2021.05.16. 위탁만료
빛솔	남동구 선수촌로 8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8단지)	269.40	45	2개	2021.05.16. 위탁만료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탁체 신청자격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단,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해 신청

【개 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단, 고용 원장은 신청가능)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야간연장)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 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 할 수 있음

□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붙임3]

○ 「2020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름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원장내정자로 함)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Ⅳ 추진일정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 : 2020. 11월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붙임1]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 공 고 : 구보, 구청 및 각 동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공고문 게재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 접 수 처 :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및 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붙임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개나리어린이집 : 2021. 1월

○ 가온사랑어린이집 외 3개소 : 2021. 3월

□ 위탁계약 체결

○ 개나리어린이집 : 2021. 2월

○ 가온사랑어린이집 외 3개소 : 2021. 4월

Ⅴ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의뢰 : 2020. 11월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

○ 개나리어린이집 : 2020. 12월중

○ 가온사랑어린이집 외 3개소 : 2021. 1월중

※ 대변인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동 및 타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및 전국 시·군·구로 공문 발송

[참고자료]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남동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명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0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비

○ 불연성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대한 구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규격봉투(불연성마대) 제작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을 제한하여 수거원의 근골격계 부담 완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방법, 기간 및 연장규정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보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로 예산낭비 방지

○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로 청소분야 재정자립도 제고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부적합 세부규정 정비로 민원발생 여지 사전차단

□ 주요내용

○ 불연성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종량제 봉투별 무게 제한 추가(안 제9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방법, 기간 및 연장규정 마련(안 제12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특수규격봉투 제작 규정 마련(안 제13조)

○ 인천시 내 봉투가격 동일 군·구간 스티커 부착없이 종량제 봉투 사용(안 제17조)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부적합 세부요건 마련(안 제18조)

○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 반영 (안 별표 5)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를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에 따른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를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연성생활폐기물은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60리터 : 15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4. 125리터 : 32킬로그램 이하

제11조제1항 본문 중 “쓰레기 규격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계약해지”를 “대행계약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대행계약자”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의 경우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

우에 대행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미근무 근로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봉투 및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를 “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하며,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를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로, “제작한다”를 “제작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제작한다”로 한다.

5.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별도 소각용으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6. 특수규격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 자기), 토사, 석재, 기타(타지않는 소재)

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제14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등의 제작)”을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투용량”을 “용량”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을 “(재사용 봉투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본문 중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각각 “재사용 봉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을 “(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종량제 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판매소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후단 중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각각 “공공용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량제봉투에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를 “종량제 봉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이 통일된 인천광역시 내 군·구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판매소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봉

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종량제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 중 “규격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쓰레기 규격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을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종량제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영 제38조의4”로, “부과기준에”를 “부과기준을”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을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2025년”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특수규격봉투의 가격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구분	2020~2024년	2025년 1월 1일부터	용 도
5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ℓ	**1,850**	**2,17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100ℓ	**3,710**	**4,32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30ℓ	2,350	2,350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60ℓ (15kg)	4,700	4,700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125ℓ (32kg)	7,870	7,870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50ℓ (13kg)	5,500	5,500	특수규격봉투

비고 :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적환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이란 ---------- ---------- ---------- ---------- ---------- ---------- -------.

<신 설>	7.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6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1. 생활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1.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2. ----------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불연성생활폐기물은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밀도를 0.25kg/ℓ)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60리터 : 15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4. 125리터 : 32킬로그램 이하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 ---------- ---------- ---------- ----------

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 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종량제 봉투----------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대행계약해지------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행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	1. ---------- 3년--------

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다만,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계획, 기술력향상계획, 경영합리화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 생활폐기물처리업자 ----------.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

	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의 경우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신 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

	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대행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미근무 근로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및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재사용 봉투---------- ---------- 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로 구분하며, 그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및 특수규격봉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재사용 봉투----------
3.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별도 소각용으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
<신 설>	6. 특수규격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 자기), 토사, 석재, 기타(타지않는 소재)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청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시방서에 의하며,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적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제작한다.	② 종량제 봉투---------- ---------- ---------- ---------- ---------- ------재사용 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제작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제작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14조(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 ----------. ② ---------- ---------- ---------- 종량제 봉투 ---------- 용량---------- ---------- ---------- ---------- ---------- ---------- --. ③ ----------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량제 봉투 ----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④ ------ 종량제 봉투 ----- ---------- 종량제 봉투 ---.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종량제 봉투------ ----------.
제15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제15조(재사용 봉투 제작) ① ---- ----재사용 봉투----------

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봉투 ----------.
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재사용 봉투 ----------.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종량제 봉투----------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 봉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 ------- 종량제 봉투------- ---------- ----------. -- ---------- 종량제 봉투-- ---------- 종량제 봉투---------- ----------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 판매소임---------- ---------- ---------- -----.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이하 “도시관리공단” 이라 한다)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량제 봉투------- ---------- ---------- ---------- ---------- ---------- ---------- ---------- 필요한 ------ ----------.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④ 공공용 봉투---------- ----------

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공공용 봉투 ----------.
⑥ 전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에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⑥ ---------- 종량제 봉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이 통일된 인천광역시 내 군·구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를 ----------.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생 략)	제18조(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판매소----------.
제2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종량제 봉투----------.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1.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도시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2. 종량제 봉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종량제 봉투--------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 종량제 봉투 ----------
6. 규격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6. 종량제 봉투 ----------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 종량제 봉투----------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1. ---------- 종량제 봉투----------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 규	2. ----------종량

격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때	제 봉투 ----------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3. ---------- 종량제 봉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23조(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 ---------- 종량제 봉투----------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 ---------- ---------- -- 범위-------종량제 봉투-- ----------. ----- ---------- - 범위----------.
제24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 유통 · 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고포상금제) ① ------ ---------- ---------- ---------- 범위----------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 ---- 영 제38조의4-------- 부과기준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권한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권한위임) ----------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1. 제23조 제1항의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	1. ----------종량제 봉투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신규 도입하고 가격을 현실화하여 구 재정자립도 제고 및 불연성폐기물 소량처리에 대한 구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윤 승 영**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얻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 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은 별표 5와 같다.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9. 4. 8.)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

을 수수료로 부과

- 판매수수료: {(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 수수료 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381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및 환경관련 사업을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 ~ 제3조)
○ 분과위원회, 임기(안 제4조 ~ 제5조)
○ 위원의 해촉, 간사와 서기(안 제6조 ~ 제7조)
○ 경비의 지원, 회의결과(안 제8조 ~ 제9조)
○ 운영세칙(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환경보전 계획 및 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평가·자문
3.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및 사업
4. 환경관련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련 자문 등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환경행정분과위원회와 구민참여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각각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행정분과위원회, 구민참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분과위원회: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이행점검 등
2. 구민참여분과위원회: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보호관련 사업 활동, 환경교육, 환경관련 홍보활동 등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 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항목: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 환경관련 사업비 등

2. 지원방법: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9조(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생략)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2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주차장법」 개정 관련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관련사항 신설(안 제25조2, 안 제25조의3)

○ 주차장 개방 보조 대상 및 지원 확대
(안 제27조제3호, 안 제28조제2항, 별표 8)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반환규정 신설(안 제29조제1항제3호)

○ 용어정비(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제4호, 안 제12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 상위법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 또는 준용
(안 제4조제2항제4호~제6호, 안 제13조제2항, 안 제3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제13항~제15항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제1항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제1호 나목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호다목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차량을”을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용대상차량”을 “이용대상 자동차”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및 주차요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체납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4조를 따른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량이”를 “자동차가”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25조의3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 교육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의무개방기간, 개방시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2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3호를 따른다.

③ 그 밖에 개방주차면수, 시설물 관리 등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개방 절차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

나. 기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

제28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방법)”을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8을 따르며, 보조금”으로, “바에”를 “바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청장과의 개방 협약 내용을 의무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제28조 관련)

1. 내집안 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의무유지기간
대문· 담장 철거 후 주차장(경형 · 일반형) 설치 시	· 담장(대문) 철거 · 주차면 조성, 조경시설 · 개방형(수목)담장, 투시형 대문 · 방범시설(방범창, 현관문, 무인방범시스템)	5년
아파트 내 추가 주차장 설치 시	· 주차 노면 정비 : 주차장 포장보수, 주차구획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경계석, 휀스, 조경시설 등)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방범시설	5년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2.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주차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휀스 등) ·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기타 시설물 · CCTV 설치비용 및 방범시설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2년
기존 개방 건물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2년
○ 기준개방시간 : 평일 · 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 · 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건축물 사용(또는 영업)시간 외 유휴시간에 따라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3. 학교 부설주차장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소규모 주차장 추가설치 포함)	기존 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용 또는 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비용 최대 20,000만원 범위 내 지원 ○ 기준개방시간 : 평일 · 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 · 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5년
학교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운영될 주차장 건설비용 100% 범위 내 지원	20년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삭 제>
5. 공영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삭 제>
6. 주차구획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	다. ---------- 자동차----------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요일제 참여 차량: 100분의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3. --------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면제	4. ----------
가.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가. ----------

라 한다)·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 ---------- ---------- 자동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0분의 50 감면	5. ---------- ------ 자동차를 --------- ---------- ----------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0분의 50 감면	6. ---------- ---------- ---------- ---------- 자동차---------- ---------- ---------- ---------- ---------- ---------- ---------- -----
7.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100분의 5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7. ---------- -- 자동차---------- ----------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4. ---------- 자동차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12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이용대상 자동차----------.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	제13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

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되, 금액은 제1항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및 주차요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체납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4조를 따른다.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자동차가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신 설>	제25조의3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 교육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의무개방기간, 개방시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2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3호를 따른다. ③ 그 밖에 개방주차면수, 시설물 관리 등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보조의 대상)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개방 절차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 나. 기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
제28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생 략)	제28조(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②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8을 따르며, 보조금---------- ----------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바를 ----. 다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반환)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구청장과의 개방 협약 내용을 의무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28조(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②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8을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8]보조금 등의 지급기준 3. 학교 부설주차장 비용지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소규모 주차장 추가설치 포함) -기존 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용 또는 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비용 최대 20,000만원 범위 내 지원

나. 비용발생요인 :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세출분야

-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위한 실공사비 (학교 당 최대 200,000천원 이내)
  (기존 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용 또는 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비용)
- 개방주차장 운영 및 인건비
  - 청소인력(노인인력) : 38,720원/월*12월=464,640원
  - 기본관리비(전기료), 기계점검 등: 300천원/월*12월=3,600천원

2) 세입분야

- 자체수입 : 개방30면*면당 20천원*12개월=7,200천원(주차료)

나. 추계 결과

- 2020년 사업비: 한 학교당 최대 200,000천원
  (2021년 이후 협약체결 학교당 최대 200,000천원)
- 개방주차장 연간 운영 및 인건비 : 4,065천원 / 개소
- 자체수입(주차료) : 7,2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주차장특별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임 덕 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21년)	2차년도(2022년)	3차년도(2023년)	4차년도(2024년)	5차년도(2025년)	계
세 입			1,800	14,400	21,600	28,800	36,000	102,600
주차장특별회계			1,800	14,400	21,600	28,800	36,000	102,600
세 출			201,016	208,130	212,195	216,260	220,325	1,057,926
주차장특별회계			201,016	208,130	212,195	216,260	220,325	1,057,926
재원 조달			201,016	208,130	212,195	216,260	220,325	1,057,926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201,016	208,130	212,195	216,260	220,325	1,057,926
	지방세							
	세외수입							
	주차장특별회계		201,016	208,130	212,195	216,260	220,325	1,057,926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주차창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창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의안 번호	2383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관련 의회 의견청취(수립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설치 필요성이 없는 해제권고 시설은 1년 이내 해제 입안조치)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시행기간											
	계			1단계(2020~2022)			2단계(2023~2024)			2-2단계(2025년 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109	104,864	138,841	5	7,906	8,016	25	23,363	32,901	79	73,595	97,924
도 로	88	63,452	110,768	4	4,438	5,681	23	22,478	29,964	61	36,536	75,123
주차장	8	6,399	8,116	0	-	-	0	-	-	8	6,399	8,116
공 원	8	18,409	11,660	1	3,468	2,335	2	885	2,937	5	14,056	6,388
녹 지	4	15,363	8,211	0		-	0	-	-	4	15,363	8,211
도서관	1	1,241	86	0	-	-	0	-	-	1	1,241	86

※ 시설별 세부계획은 붙임1 단계별집행계획(사업부서 취합자료)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행 기 간								
	총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계	109	104,864	100%	14	20,342	100%	95	84,522	100%
도 로	88	63,452	60%	12	3,328	16%	76	60,124	71%
주 차 장	8	6,399	6%	0	-	0%	8	6,399	8%
공 원	8	18,409	18%	1	5,997	30%	7	12,412	15%
녹 지	4	15,363	15%	1	11,017	54%	3	4,346	5%
도 서 관	1	1,241	1%	0	-	0%	1	1,241	1%

나.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우선해제 필요시설

- 해당없음

별첨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사업부서 취합자료) 1부.
2.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 관리카드(사업부서 취합자료) 1부. 끝.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4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추가 : (안 제4조 제1항 및 제7항)

○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기준 명확화 : (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 (안 제8조 제1항)

○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 입찰제도 도입 : (안 제9조 제1항)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 : (안 제9조 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을 “주택 및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정한 자”를 “규정한 자”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경우와”를 “각 목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보안등, CCTV”를 “보안등”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의 경우와”를 “목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교체를 포함한다”를 “교체하여야 함”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담장·옹벽·축대·보안등)”을 “(담장·옹벽·축대·단지 내 보안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CCTV 설치 및 보수(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경우와”를 “목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지원기준) 규정에”를 “지원기준)을”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지원한도는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7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다만, 보조금은 재료비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원신청은 공동주택별로 연 1회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이하“자문단”이라”를 “이하 “자문단”이라”로, “자문단”을 “자문위원”으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있다”를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을 "현장조사 및 별표 4(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로,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관리주체에 통지"를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반환·완료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9조의 제목 "(보고 및 검사)"를 "(보고, 검사,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원결정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완료(완공)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수행상황 파악 및 사업완료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대조

· 검토 등을 확인 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30	7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사업은 지원금의10% 증액 ▪ 공모 사업의 경우는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중앙정부, 인천시 등과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30	70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0	70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0	70	
5.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0	70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0	7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 포장	50	50	▪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50	50	
3.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 ·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하여야 함	50	50	
4.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단지 내 보안등 등)의 유지·보수	50	50	
5. 다세대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50	50	
6.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한정함)	50	50	
7.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개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난방기기 설치는 제외함)	50	50	
8. CCTV 설치 및 보수(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50	5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	50	

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70	30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3호에 의한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긴급보수 공사 (아파트, 연립주택 D, E등급에 한정함)	70	30	
3.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한정함)	70	30	

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 사업<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70	3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0	30	

2.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비고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시 지원금 산정(예시)

▪ 지원액= (1천만원×0.3) + (1천만원×0.3×0.1) + (1천만원×0.3×0.1) = 3.6**백만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인근지역주민포함

나. 공용시설물 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별표 3]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제7조의2 관련)

1. 자문위원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표 4]

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

(제8조 제1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부서 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30년 **이상** ■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 준공 후 10년 **미만**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50세대 미만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5)	■ 30년 **이상**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2 9 6 3	
	보조금 지원 횟수(15)	■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이상 지원	15 12 9 6 3	
	관리 투명성(5)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2 2 1	
	시책이행(5)	■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2 2 1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2), 우수(모범)단지 선정(3)	+5이내	
감점		■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2), 지원사업 부실 사례(3)	-5이내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가 동일점수일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지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후단 신설>	1. ---------- ---------- ---------- 주택 및 시설---------- ---------.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 ---------- -- 공동주택---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자를 말한다.	4. ---------- -------- 규정한 자------- --.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삭 제>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제외 한다	1. ---------- ----- 각 목과 ----------. - ----------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가. ---------- ------- 보안등-------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2. ---------- ---------- 목과 ---- -----.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다. ---------- ---------- ----------. --------- ---------- ----------

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 교체하여야 함.
라.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보안등)의 유지·보수.	라. ------(담장·옹벽·축대·단지 내 보안등)----.
마.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삭 제>
바.~아. (생 략)	바.~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CCTV 설치 및 보수(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자. (생 략)	차. (현행 자목과 같음)
3.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보강 지원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4.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4. ---------- 목과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	⑤ ----------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규정에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별표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지원기준)을 ---------- 별표 2---------- ----------. <단서 삭제> 이 경우 별표 2의 지원한도는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신 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 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7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다만, 보조금은 재료비에 한정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조(지원의 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신청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원의 우선순위) 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7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신청은 공동주택별로 년 1회에 한하며, 보조금을 지원받	④ 지원신청은 공동주택별로 연 1회로 한다.

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7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3과 같다.	제7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이하 “자문단”이라---------- -- 자문위원---------- ------ 별표 3-----.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 ---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후단 삭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7조	제8조(지원결정) ① ----------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및 별표 4(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 결정----------.
<신 설>	②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반환·완료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결정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착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보고, 검사, 정산 등) ①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 ----------.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

	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	1.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2. ----------별지 제5호서식----------
3. 보조사업을 완료(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완료(완공)보고서	3. ----------별지 제6호서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완료(완공)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수행상황 파악 및 사업완료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대조·검토 등을 확인 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보조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삭 제>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장 김 주 호

[참고자료]

□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195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0.11.13. ~ 2020.11.27.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8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20-004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6. ○ 견인일 : 2020.10.12.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4동 255-3 지인공인중개사 주차장
	2020-0045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7. ○ 견인일 : 2020.10.14. ○ 보관장소 : ㈜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현동 741-3
	2020-0045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7. ○ 견인일 : 2020.10.14. ○ 보관장소 : ㈜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15 앞 도로변
		이하여백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0-004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591번길 56 프라임캐슬 앞 인도변	2020. 10.14.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2	2020-0042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동 1350 구월문화어린이공원 녹지변	2020. 9.22.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3	2020-0042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5 간석태화아파트 후문 입구 앞 도로변	2020. 10.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0-0042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서창동 567-4 서창5호 공영주차장 앞	2020. 9.22.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5	2020-0044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238-9 두경요양병원 앞 전봇대	2020. 10.6.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6	2020-0045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4동 255-3 지인공인중개사 주차장	2020. 10.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7	2020-0045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 741-3	2020. 10.14.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8	2020-0045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15 앞 도로변	2020. 10.14.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0-2197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0년 폭염대비 그늘막 구매설치(긴급)

나. 세부규격 및 계약조건 : 그늘막(파라솔 고정형) 29개소

※붙임의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 56,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입찰참가자격, 시방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0.11.16.(월) 10: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0.11.19.(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11.19.(목) 11:00,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방서대로 납품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비치파라솔(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61016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입찰**,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남동구청 재무과 김소애 주무관(☎032-453-2265)
- 시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남동구 안전총괄과 남상태 주무관(☎032-453-23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0년 11월 16일

남 동 구 재 무 관

2020년 폭염대비 그늘막 구매·설치(2차)

2020. 10.

남 동 구
(안전총괄과)

1.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0년 폭염대비 그늘막 구매・설치(2차)

2. 위　　치 : 남동구 관내 횡단보도 인접보도 및 교통섬(29개소)

[붙임(그늘막 설치 대상지) 참조]

3. 목　　적

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폭염일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나. 주민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및 교통섬 주변에 폭염방지 그늘막을 설치하여 여름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관내 횡단보도 및 교통섬 인근 보도(29개소)

나. 설치규모 : 그늘막(파라솔 고정형) 29개소
- 지름 4m : 29개소

5.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6. 시스템 구성 소요장비 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5610160101, 비치파라솔)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8. 제출서류

가. 납품 시 제출서류

(1) 제품 카탈로그 1부

(2) 운용자 설명서 1부

(3) 완료보고서 및 사진대지(기초 포함) 2부.

(4) 기타 구매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 물품납품업체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계약중지

가. “발주기관”은 자체사정에 따라 설치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로서 “발주기관”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남동구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 하자보수

가. 납품된 제품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A/S기간(하자보증기간)중 발주부서의 요구 시 지체 없이 고장 정비가 되어야 한다. 단, 자연재해로 파손 또는 부주의 시는 별개로 한다.

다. 발주처의 요구 시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5년간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설치 유의사항

가. 착수일에 현장 상황 사전 체크 후 사업 진행
- 현장조사 후, 위치별 마킹 및 규격 결정
-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상가민원우려・나무 등으로 그늘 자연형성, 지장물 저촉 대상지) 등은 특히 면밀히 조사 후 보고
- 상기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후 최종 설치 위치, 규격 결정
- “발주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위치, 규격,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규격에 맞고 비와 강풍에 강한, 기본형파라솔로 초대형파라솔 (지름 3m-5m이내)로 공급하여야 함

다. 지정된 원단, 색상에 남동구청의 로고 및 원하는 문구 디자인 표기하여야 함

라. 누구나 쉽게 접고 펼칠 수 있는 사양으로, 녹슬지 않는 와이어줄을 사용하여야 함

마. 사용을 안 할 시 연결 기둥을 한번 접어서 주 기둥에 묶어 간결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바. 원단은 메쉬원단 종류를 사용하여 90% 이상의 자외선 차단 처리된 정품 원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람이 잘 통해 강풍에 강해야 하고 비에도 젖지 않아야 하며, 가벼워야 한다. 만약, 설치 후 제품 및 기술상 이상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사. 만약 필요에 따라 사용을 안 할 시 물품의 훼손 없이 분리 및 재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분리 후 바닥 기초 볼트 등이 보행자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초 덮개 등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초 터파기 시 전기시설, 가스관, 통신선, 상수도관 등 기존 지하매설물이 저촉이 되지 않는 위치에 시공하여야 하며, 점자블록과 60㎝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만약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지하매설물 파손 등 기존시설물 저촉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자.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평면교차로 시거 기준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주 기둥에는 야간에 보행자, 차량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광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주 기둥에 관리번호, 시설물명, 관리부서 연락처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작동매뉴얼을 부착하여야 한다.

타. 기타, 행정안전부의 그늘막 설치·관리지침(2020. 3.) 상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납품조건: 기초공사 및 운송 설치까지 전부 포함(안내표지판, 형광테이프, 작동매뉴얼 등 포함)

13. 기 타

가. 상기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장소는 발주 후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위치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 하에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별도 또는 추가 공사비 요구 없이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협의하여 규격 및 수량에 따라 정산 또는 계약변경 절차 이행한다.

나. 설치불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2019년 남동구 내 설치된 파라솔형 그늘막 설치 수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그늘막 과업지시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0년 폭염대비 그늘막 구매·설치(2차)”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일반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범위

가. 접이식 초대형파라솔 29개소 설치 [붙임(그늘막 설치 대상지) 참조]

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황에 맞추어 지름 3M- 5M이내 설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다.

3. 재질

가. 철재

(1) 철재는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의 칠은 고르게 빠짐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나. 파라솔 크기 : 아래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높이	**5M형:3.5M** **4M형:3.3M** 3.5M형:3.1M **3M형: 3.0M**	펼침 높이	**5M형:2.3M** **4M형:2.3M** 3.5M형:2.2M **3M형: 2.2M**	원형 파라솔 지름	**5M형:4.9M** **4M형:4.8M** 3.5M형:3.5M **3M형: 2.85M**

※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4. 기타재료

가. 조립볼트와 보강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설치한다.

나.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 할 수 있다.

다. 파라솔 기둥은 강성의 “속대+플레이트 일체형 부재”의 겉에 주 기둥이 끼워지는 형태를 사용하며, 중심 2단계 보강용 기둥, 하부기둥, 상부 암으로 구성한다.

(1) 보강 하부 중심 보강용 기둥은 KS규격 80A 89.1파이 3.5t 파이프로 보강 기둥하부에서 파라솔 본체의 회전을 원활이 함

(2) 상부 기둥은 KS규격 65A 76.3파이 3.5t 스틸파이프

라. 파라솔 본체의 살대 구성은 2.5 X 2.5 각 1.2t 올 스테인리스 직사각파이프 외 살집 중심축과 살집이 모두 스테인리스로 구성 되어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각 부위 연결용 부품은 올 스테인 볼트와 이탈방지를 위한 나일론 보강 너트를 사용함

바. on/off 용 와이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직경 4mm이상의 와이어로 인장에 강하여야 하며, 쉽게 녹슬지 않아야 한다.

사. 하부의 플레이트는 친환경재질의 커버를 사용하여 덮는다.

아. 파라솔 최상부 커버는 금속캐스팅 제품으로 튼튼히 기둥에 고정되어야 한다.

5. 제조 및 설치

가. 콘크리트 시공은 앙카 틀을 함께 매립 완전 양생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파라솔 기초볼트는 D13 이형철근으로 조립된 3/4인치 L형 기초볼트 (가로300mm×세로300mm×길이500mm 이상)의 치구를 매립하여 사용한다.

다. 상기, 매립치구의 콘크리팅 크기는 가로500mm×세로500mm×길이550mm 이상으로 타설한다.

라.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도록 작업한다.

마. 설치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초 설치에 따른 지하 매설물 저촉 없이 설치해야 한다.

바. 보행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유모차, 이륜차, 휠체어 등 통행에 지장없고, 점자블록과 이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도의 유효폭원에 장애 없이 도로에 침범하지 않고 교차로 등 기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회전반경 등 현장상황 따라 고려하여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도 장

가. 도장 색상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도장 특수우레탄 하도 상도 외 (분체도장)

다. 피도면에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7. 원 단

가. 원단은 쿨라루 메쉬원단(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325g/m2 이상의 밀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며, mono-film의 격자구조를 가진 shade factor 85% 이상, air-flow factor 15% 이상, 90% 이상의 자외선 차단 처리된 정품 원단을 사용한다.

나. 원단의 색상은 컬러 코드 R 45 G 43 B 111, C 100 M 100 Y25 K 11 글씨 및 심볼마크의 색은 R 244 G 247 B 246, C 3 M 1 Y2 K 0 로 하여

야한다.

8. 기 능

가. 핸드 윈치를 사용하여 접고 펼치기가 쉬워야 한다.

나. 와이어줄은 스텐 와이어를 사용하여 녹슬지 않아야 된다.

다. 하부기둥에서 360도 회전기능이 되어야 함.

라. 파라솔을 접어서 상단 중간 꺾임 기능으로 접어 주 기둥에 간결하게 묶어 보관 및 관리가 편해야 하며 보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마. 파라솔을 접거나 펼 때 사용하는 상단 레버는 녹슬거나 부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 하여야 한다.

바. 약 필요에 따라 사용을 안 할 시 연결 기둥 등을 떼어 내거나 파라솔만 떼어 내는 등 이와 유사하게 쉽게 분리 및 재설치 될 수 있어야 하며, 분리 후 바닥 기초 볼트 등이 보행자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초 덮개 등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파라솔 힌지 고정핀 조절장치(회전보조장치)를 설치하여, 후크를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여 손쉽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늘막 기둥 하부에 방향이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인 쇄

가. 지정색 원단에 남동구청 로고 등 원하는 문구를 원하는 위치에 인쇄 한다.

나. 실크인쇄는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변색이 되지 않게 오래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시공

가. 설치사항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에 의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대형파라솔은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5) 강성구조로 강풍에 강하고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위치

(1) 가로수가 없어 그늘이 필요한 곳

(2)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

(3)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특히,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고려)

(4) 주변 상가 간판 등에 방해가 없는 곳

(5) 기타 음향신호기 등 시설에 지장이 없는 곳

(6) 상기 내용 등에 저촉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설치위치 변경 등 협의 추진

11. 검사

가. 일반사항

(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결이 도면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 한다.

(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 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12. 유지보수(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최종검사(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자연적 고장 시에는 도급자의 경비부담으로 보수 정비 또는 동종의 기기로 교환하여야 한다.(단 자연재해 태풍 외 기상이변 및 부주의 파손은 부속 외 출장경비 별도)

나. “발주기관”의 요구 시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5년간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수 및 작동을 위한 주요부품의 공급

가. 그늘막 개폐를 위한 핸드 윈치 : 29개(설치수량 당 1개)

나. 와이어 등 기타 부속품(“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14. 제출목록 : 제품 카탈로그 1부, 운용자 설명서 1부, 설치완료보고 2부.

가. 설치완료 보고서 구성

(1) 동별 그늘막 설치 총괄표 및 총괄위치도 2부

(2) 동별 그늘막 관리대장 2부(아래 서식 참조 작성)

<table>
<tr><td>관리
번호</td><td></td><td>동</td><td>구월1동</td><td>설치
위치</td><td colspan="2">길병원사거리 쉐보레 남동전시장 앞 교통섬
(남동대로)[구월동1194-7]</td><td>크기(m)
(5,4,3형)</td><td>5</td><td>설치일</td><td>2019. . .</td></tr>
<tr><td colspan="4">위치도</td><td colspan="7">전경사진</td></tr>
<tr><td colspan="4" rowspan="2"></td><td colspan="2">전</td><td colspan="3">관리번호</td><td colspan="2">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able>

15. 설치형태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

관리번호	남동구 구월1동
1	**평일(09: 00 ~ 18:00)**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032-453-2330
	야간, 공휴일·주말 남동구청 당직실 032-453-2222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부착(반사지 활용)

16. 설치도면

가. 설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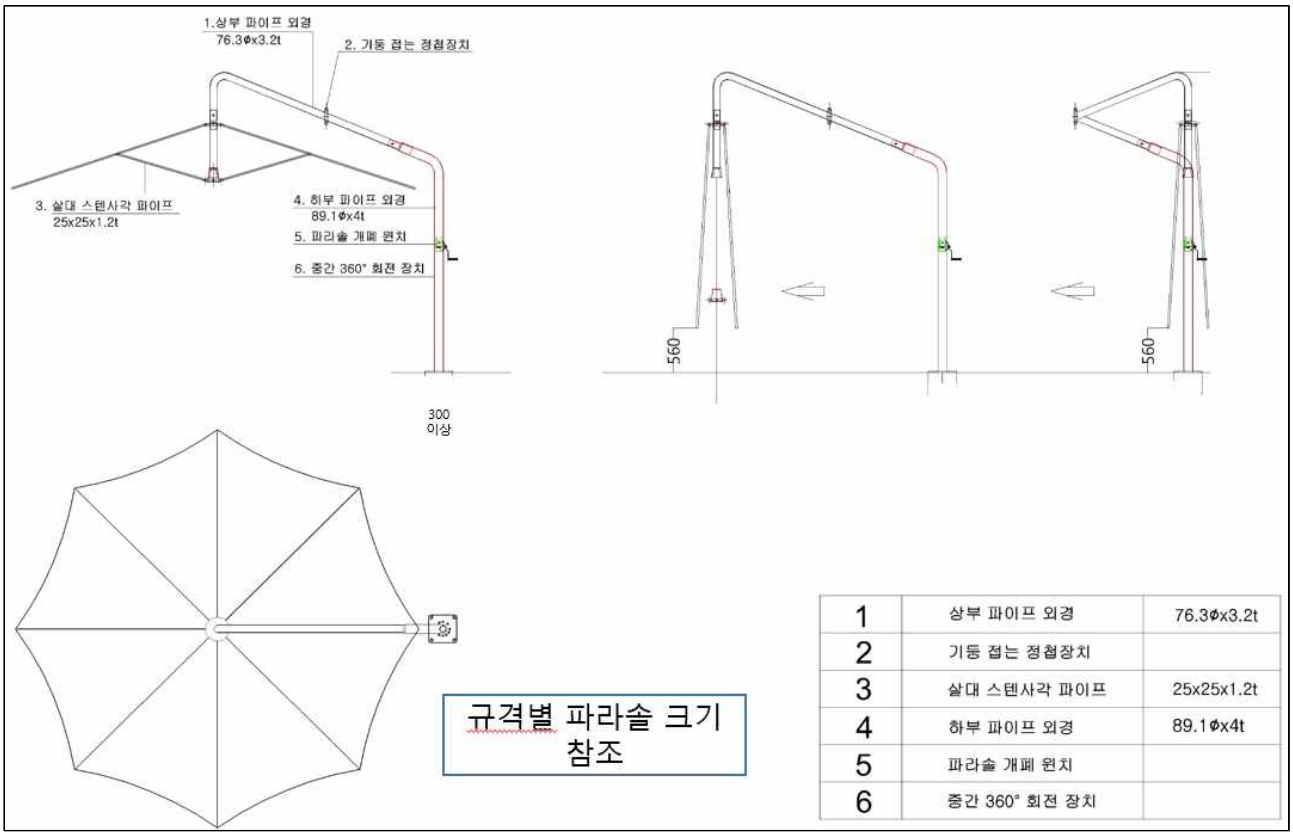

1	상부 파이프 외경	76.3ø x3.2t
2	기둥 접는 정첩장치	
3	살대 스텐사각 파이프	25x25x1.2t
4	하부 파이프 외경	89.1ø x4t
5	파라솔 개폐 윈치	
6	중간 360° 회전 장치	

- 파라솔 크기 : 아래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

전체 높이	5M형:3.5M 4M형:3.3M 3.5M형:3.1M 3M형: 3.0M	펼침 높이	5M형:2.3M 4M형:2.3M 3.5M형:2.2M 3M형: 2.2M	원형 파라솔 지름	5M형:4.7M 4M형:4.8M 3.5M형:3.5M 3M형: 2.85M

나. 기능구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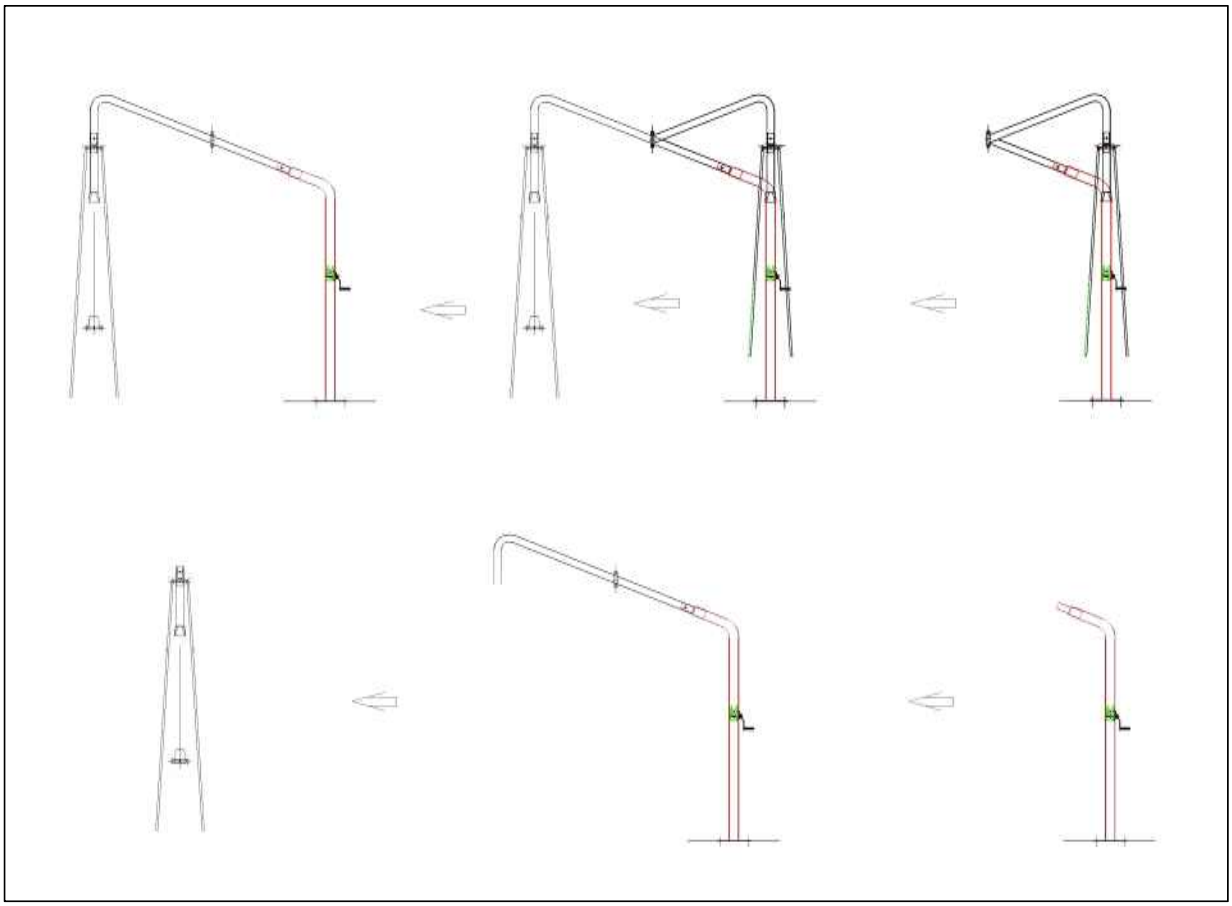

※ 기둥에 접어서 보관, 원단만 따로 분리, 기둥전체 분리 보관 가능토록 기능 구현: 훼손 및 위험대비

붙임 그늘막 설치 대상지 현황 1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202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더1657외 10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20. 11. 13.(금) ~ 11. 28.(토)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20년 11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0년 10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더1657	백*섭	2020-10-07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 (구월동, 구월*****)
2	**머8335	이*재	2020-10-07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4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번길 *-**, *동 ***호 (도림동, ***)
3	**도3631	나*임	2020-10-16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 *동 ***호 (서창동, *****)
4	**더9741	지*희	2020-10-19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동 ***호 (간석동, ****)
5	**가8363	임*형	2020-10-27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단지)
6	**버2094	최*화	2020-10-27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층 (구월동)
7	**가1773	정*영	2020-11-04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동 ****호 (만수동, **아파트)
8	**다2853	홍*민	2020-11-03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2398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 ***동***호 (중산동)
9	**루2619	*철	2020-11-06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호 (간석동, *****)
10	**무8660	최*석	2020-11-09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 (간석동)
11	**고3146	한*두	2020-11-11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동***호 (만수동, *****주택)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209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기획예산과
3. 2021년도 예산안	기획예산과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
5.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020년 11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2388

제출년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제3회 추경예산액 (A)	2020년도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합 계	990,332,901	969,616,564	20,716,337	2.14%	
일 반 회 계	958,138,717	938,567,013	19,571,704	2.09%	
특 별 회 계	32,194,184	31,049,551	1,144,633	3.69%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0,844,799	10,844,799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200	18,200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1,754,477	1,415,874	338,603	23.91%	
지하수관리	290,000	290,000	0	0.00%	
주 차 장	19,286,708	18,480,678	806,030	4.36%	

3. 첨부서류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389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1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 남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총 7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2019년도 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35,210,687 (23,590,687)	147,695,461 (147,201,567)	153,441,067 (153,147,173)	29,465,081 (17,645,081)	△5,745,606 (△5,945,606)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조성 순계

○ 기금운용규모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7개 기금	171,286,148 (159,172,254)	171,286,148 (159,172,254)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조성 순계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기금명	예산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171,286,148	171,286,148	0	
	(159,172,254)	(159,172,254)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13,894	12,113,894	0	
재난관리기금	155,750,148	155,750,148	0	
문화예술진흥기금	35,149	35,149	0	
중소기업육성기금	1,222,063	1,222,063	0	
사회복지기금	761,430	761,430	0	
옥외광고발전기금	688,031	688,031	0	
식품진흥기금	715,433	715,433	0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조성 순계

☐ 별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1573호 남동구 구보 2020. 11. 19. 목요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남동구 기획예산과
예 산 팀

목 차

Ⅰ 총괄기금운용계획

1. 기 금 개 요 .....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3. 기 금 조 성 규 모 .....

Ⅱ 기금별 운용계획

□ 식 품 진 흥 기 금 .....

Ⅰ. 총 괄 기 금 운 용 계 획

1. 기금개요

가. 운용방침

□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

□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운용의 공정성 제고

나.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재정 안 정 화 기 금	2020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	지방재정법,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통합관리기금 흡수)	기획예산과
재난관리 기 금	2005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남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2003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활동 지원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화관광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4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도모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업지원과
사회복지 기 금	1999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지원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의 발전 및 관리 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남동구 옥외광고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경관과
식품진흥 기 금	200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식품위생법 제89조,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세입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171,286,148	7,636,336	138,617,143	0	1,000	0	23,590,687	200,000	1,130,982	110,000
	(159,172,254)	(7,636,336)	(138,617,143)	(0)	(1,000)	(0)	(11,970,687)	(0)	(837,088)	(1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13,894	0	0	0	0	0	11,620,000	200,000	293,894	0
재난관리기금	155,750,148	7,411,253	138,521,956	0	0	0	9,325,245	0	491,694	0
문화예술진흥기금	35,149	0	0	0	0	0	9,357	0	25,792	0
중소기업육성기금	1,222,063	200,000	0	0	0	0	888,248	0	133,815	0
사회복지기금	761,430	0	0	0	1,000	0	613,352	0	127,078	2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688,031	25,083	0	0	0	0	635,360	0	17,588	10,000
식품진흥기금	715,433	0	95,187	0	0	0	499,125	0	41,121	80,000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나. 세출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지출계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171,286,148	152,754,963	100,000	276,210	0	200,000	17,645,081	0	293,894	16,000
	(159,172,254)	(152,754,963)	(100,000)	(276,210)	(0)	(200,000)	(5,825,081)	(0)	(0)	(16,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13,894	0	0	0	0	0	11,820,000	0	293,894	0
재난관리기금	155,750,148	151,995,180	0	276,210	0	0	3,478,758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35,149	9,000	0	0	0	0	26,149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222,063	128,351	0	0	0	200,000	893,712	0	0	0
사회복지기금	761,430	114,923	100,000	0	0	0	546,507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688,031	219,360	0	0	0	0	468,671	0	0	0
식품진흥기금	715,433	288,149	0	0	0	0	411,284	0	0	16,000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3.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 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5,210,687	147,695,461	153,441,067	29,465,081	△5,745,606
	(23,590,687)	(147,201,567)	(153,147,173)	(17,645,081)	(△5,945,6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620,000	493,894	293,894	11,820,000	200,000
재난관리기금	9,325,245	146,424,903	152,271,390	3,478,758	△5,846,487
문화예술진흥기금	1,009,357	25,792	9,000	1,026,149	16,792
중소기업육성기금	5,388,248	333,815	128,351	5,593,712	205,464
사회복지기금	5,163,352	148,078	214,923	5,096,507	△66,845
옥외광고발전기금	935,360	52,671	219,360	768,671	△166,689
식품진흥기금	1,769,125	216,308	304,149	1,681,284	△87,841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Ⅱ. 기금별 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 운용원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3) 설치년도 : 2001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확산으로 선진 음식문화 구현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769,125	216,308	304,149	△87,841	1,681,284	

(2)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3) 지원기준

○ 식품관계자 및 구민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사업

(4)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위생 관련자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A)	전년도 수입액 (B)	증 감 (C=A-B)	항 목	지출액 (A)	전년도 지출액 (B)	증 감 (C=A-B)
합 계	715,433	715,433	0	**합 계**	715,433	715,433	0
전 입 금	0	0	0	비 융 자 성 사 업 비	288,149	318,154	△30,005
보 조 금	95,187	95,187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 탁 금 원 금 회 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499,125	499,125	0	예 치 금	411,284	381,279	30,005
예 수 금	0	0	0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0	0	0
이 자 수 입	41,121	41,121	0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0	0	0
기 타 수 입	80,000	80,000	0	기 타 지 출	16,000	16,000	0

나. 수입계획(변동없음)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식품위생과	715,433	715,433	0
식품의약안전	715,433	715,433	0
식품위생관리	288,149	318,154	△30,005
선진 음식문화 조성(식품진흥기금)	288,149	318,154	△30,005
지역 음식문화 발전 행사 지원	0	44,680	△44,680
201 일반운영비	0	20,000	△20,000
01 사무관리비 △1,200	0	1,200	△1,200
○운영수당 △1,200			
o 심사위원수당			
경정 0원 - 기정 1,200,000원 = △1,200			
[시 △600]			
[구 △600]			
03 행사운영비 △18,800	0	18,800	△18,800
○행사장설치및행사진행			
경정 0원 - 기정 17,000,000원 = △17,000			
[시 △8,500]			
[구 △8,500]			
○기타소모품등구입			
경정 0원 - 기정 600,000원 = △600			
[시 △300]			
[구 △300]			
○행사참여자위생용품구입			
경정 0원 - 기정 1,200,000원 = △1,200			
[시 △600]			
[구 △600]			
301 일반보전금	0	24,680	△24,680
09 행사실비지원금 △15,480	0	15,480	△15,480
○참가팀재료비지급			
경정 0원 - 기정 15,000,000원 = △15,000			
○행사자원봉사자식대			
경정 0원 - 기정 480,000원 = △480			
12 기타보상금 △9,200	0	9,200	△9,200
○경연대회우수작시상금지급			
경정 0원 - 기정 9,200,000원 = △9,200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식품위생정책 홍보		95,075	80,400	14,675
201 일반운영비		62,000	44,400	17,600
01 사무관리비	18,000	62,000	44,000	18,000
○일반수용비	18,000			
o 어르신섬김업소위생용품지원				
경정 0원 - 기정 2,000,000원 =	△2,000			
o 안심식당방역위생관리홍보물품지원				
100,000원*200개 =	20,000			
03 행사운영비	△400	0	400	△400
○행사운영비	△400			
o 냉장고정리수납전문가양성교육				
경정 0원 - 기정 400,000원 =	△400			
402 민간자본이전		33,075	36,000	△2,925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925	33,075	36,000	△2,925
○음식문화지원사업	△2,925			
o 주방환기시설교체지원				
경정 13,510,000원 - 기정 16,000,000원 =	△2,490			
o 음식점주방문화개선 자금 지원				
경정 4,565,000원 - 기정 5,000,000원 =	△435			
재무활동(식품위생과)		427,284	397,279	30,005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427,284	397,279	30,005
예치금(식품진흥기금)		411,284	381,279	30,005
602 예치금		411,284	381,279	30,005
01 예치금	30,005	411,284	381,279	30,005
○예치금				
경정 411,284,000원 - 기정 381,279,000원 =	30,005			
지 출 합 계		**715,433**	**715,433**	**0**

3.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가. 조성액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2,787,856	0	733,553	0	0	0	434,207	1,620,096
2015년도	161,398	0	42,000	0	0	0	51,604	67,794
2016년도	209,342	0	47,250	0	0	0	40,490	121,602
2017년도	210,875	0	48,000	0	0	0	26,921	135,954
2018년도	208,643	0	60,348	0	0	0	33,185	115,110
2019년도	157,167	0	75,253	0	0	0	34,946	46,968
2020년도	216,308	0	95,187	0	0	0	41,121	80,000
계	**3,951,589**	**0**	**1,101,591**	**0**	**0**	**0**	**662,474**	**2,187,524**

나. 집행액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1,370,288	1,200,232	0	80,391	0	0	89,665	1,417,568
2015년도	99,598	95,395	0	0	0	0	4,203	61,800
2016년도	114,999	102,610	0	0	0	0	12,389	94,343
2017년도	112,352	110,809	0	0	0	0	1,543	98,523
2018년도	137,003	134,073	0	0	0	0	2,930	71,640
2019년도	131,916	119,847	0	0	0	0	12,069	25,251
2020년도	304,149	288,149	0	0	0	0	16,000	△87,841
계	**2,270,305**	**2,051,115**	**0**	**80,391**	**0**	**0**	**138,799**	**1,681,28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 계		1,743,875	1,769,125	1,681,284	△87,841	
예 치 금	신 한 은 행	473,875	499,125	411,284	△87,841	
예 탁 금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1,270,000	1,270,000	1,270,000	0	

2021년도 예산안

의 안 번 호	2402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1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 (A)	2020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합 계	916,138,610	869,029,355	47,109,255	5.42%	
일 반 회 계	890,202,014	842,350,443	47,851,571	5.68%	
특 별 회 계	25,936,596	26,678,912	△742,316	△2.78%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1,327,651	10,844,799	482,852	4.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200	18,200	1,000	5.49%	
의 료 급 여 기 금	1,491,345	1,328,113	163,232	12.29%	
지하수관리	313,400	290,000	23,400	8.07%	
주 차 장	12,785,000	14,197,800	△1,412,800	△9.95%	

3. 첨부서류

○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2403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1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29,465,081 (17,645,081)	13,675,389 (13,224,912)	4,241,555 (3,946,407)	38,898,915 (26,923,586)	9,433,834 (9,278,5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20,000	11,671,229	500,477	22,990,752	11,170,752
재난관리기금	3,478,758	1,276,175	1,951,550	2,803,383	△675,375
문화예술진흥기금	1,026,149	21,240	27,000	1,020,389	△5,760
중소기업육성기금	5,593,712	112,479	400,000	5,306,191	△287,521
사회복지기금	5,096,507	108,867	356,806	4,848,568	△247,939
옥외광고발전기금	768,671	326,222	760,000	334,893	△433,778
식품진흥기금	1,681,284	159,177	245,722	1,594,739	△86,545

※ ( )내 수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금액

3. 첨부서류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1년도 예산안에 첨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6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17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도시관리공단 신규 및 명칭변경 위탁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추진 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명칭변경(안 제23조 제10호, 제16호)

-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청년미디어타워 관리·운영사업
- 남동복지관 건물 위탁관리->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 목적사업 추가(안 제23조 제22호, 제23호)

-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남동타워”를 “청년미디어타워”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남동복지관”을 “남동구 평생학습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3조(목적사업)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	10. 청년미디어타워 -------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남동복지관 건물 위탁관리	16. 남동구 평생학습관 ----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신 설>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신설)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신설)

나. 비용발생 요인 : 목적사업 추가

(1)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위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 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비는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각 사업비는 연간 인건비·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추계 결과

(1)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은 2021년 인건비성 경비로 218,959천원,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비인건비성 경비로 62,96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매년 인건비·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 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계된다.

(2)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은 2021년 수선유지비 등 비인건비성 경비로 5,6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 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계된다.

다. 재원조달 방안

(1) 전액 구비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 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87,519	296,145	305,031	314,183	323,609	1,526,487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281,919	290,377	299,089	308,062	317,304	1,496,751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5,600	5,768	5,942	6,121	6,305	29,736
재원 조달			287,519	296,145	305,031	314,183	323,609	1,526,48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87,519	296,145	305,031	314,183	323,609	1,526,487
	지방세							
	세외수입		287,519	296,145	305,031	314,183	323,609	1,526,487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2020-221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1.17. ~ 2020.12.1.
3. 공고대상 : 이륜차 13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20-0044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4. ○ 견인일 : 2020.10.23.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구월동 201-175 성원빌라 앞
	2020-004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23. ○ 견인일 : 2020.10.14. ○ 보관장소 : 기전산업㈜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구월동 1131-12 앞
	2020-004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5. ○ 견인일 : 2020.10.26. 이후 ○ 보관장소 : ㈜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동 37-37 앞
	2020-0049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12. ○ 견인일 : 2020.11.2. 이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고잔동 678-11 인도변
	2020-0049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2대) ○ 현장확인일 : 2020.10.13. ○ 견인일 : 2020.11.2. 이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미래로 30 대명어반스테이오피스텔 지하1층 11번기둥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20-0049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13.
○ 견인일 : 2020.11.2. 이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미래로 30
대명어반스테이오피스텔
지하1층 11번기둥

2020-0049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14.
○ 견인일 : 2020.11.2. 이후
○ 보관장소 : 기전산업㈜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56

2020-0050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15.
○ 견인일 : 2020.11.3. 이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장승남로 42 (두리왕돈까스 앞)

2020-0051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19.
○ 견인일 : 2020.11.9. 이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만수로 14-25 만수주공1단지
107동 앞 큰도로 인도변 녹지

2020-0051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22.
○ 견인일 : 2020.11.9. 이후
○ 보관장소 : 기전산업㈜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동 570-5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20-0052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27. ○ 견인일 : 2020.11.16. 이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용천로98번길 5 도로변
	2020-0052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27. ○ 견인일 : 2020.11.16. 이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경인로 598
	2020-0052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10.28. ○ 견인일 : 2020.11.16. 이후 ○ 보관장소 : 기전산업㈜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만수서로 20 도로변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0-0044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동 201-175 성원빌라 앞	2020.10.23.	㈜인천폐차사업소	
2	2020-0046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동 1131-12 앞	2020.10.14.	기전산업㈜폐차사업소	
3	2020-0048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37-37 앞	2020.10.26. 이후	㈜서울폐차사업소	
4	2020-0049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고잔동 678-11 인도변	2020.11.2. 이후	㈜인천폐차사업소	
5	2020-00498	번호판 없음 (2대)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미래로 30 대명어반스테이오피스텔 지하1층 11번기둥	2020.11.2. 이후	㈜인천폐차사업소	
6	2020-0049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56	2020.11.2. 이후	기전산업㈜폐차사업소	
7	2020-0050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장승남로 42 (두리왕돈까스 앞)	2020.11.3. 이후	㈜인천폐차사업소	
8	2020-0051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만수로 14-25 만수주공1단지 107동 앞 큰도로 인도변 녹지	2020.11.9. 이후	㈜인천폐차사업소	
9	2020-0051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570-5	2020.11.11.	기전산업㈜폐차사업소	

10	2020-0052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용천로98번길 5 도로변	2020.11.16. 이후	㈜인천폐차사업소	
11	2020-0052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경인로 598	2020.11.16. 이후	㈜인천폐차사업소	
12	2020-00525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만수서로 20 도로변	2020.11.16. 이후	기전산업㈜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0-22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1지구 소로3-11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1지구 소로3-11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3),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05-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도림1지구 소로3-1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75, B=6.0mm, A=48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8.10.26. ~ 2020.12.31.

○ 변경: 2018.10.26.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용지조서

일련번호	동명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도림동	202-44	전	146	146	박**외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모아저축은행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72	근저당권
2	도림동	205-4	대	166	166	**모션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가좌공단지점)	근저당권
3	도림동	207	대	543	3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4	도림동	208-1	대	19	19	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	㈜참저축은행	대구 수성구 발구벌대로 2421	근저당권
5	도림동	208-2	대	22	22	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	㈜참저축은행	대구 수성구 발구벌대로 2421	근저당권
6	도림동	209-5	대	19	19	백**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주안공단사랑지점)	근저당권
7	도림동	611-55	도	180	106	국토해양부				
합 계				1,095	481					

□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도림동	205-4	대추나무		1	아이모아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2	도림동	611-15	제수변		1			인천상수도사업본부
3	도림동	611-15	한전주		1			한국전력공사
소 계					3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70호

제269회 남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일 시 : 2020년11월20일(금요일) 오전10시

O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2020년 11월 11일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0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11. 26.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11. 11. ~ 2020. 11. 25.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3-0200156	명태명가	안O숙	문화서로4번길 61-44, 1층(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 1. 10.	2020. 11. 26.
일반음식점	2018-0202600	고메돈까스 인천시청점	이O준	구월남로 151, 3층 전부호(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 4. 16.	2020. 11. 26.

6. 고 지 사 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 11. 2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6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0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11. 30.
3. 처 분 근 거 법 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11. 13. ~ 2020. 11. 2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014-0199133	지예	황**	하촌로70번길 61, 1층(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1-30	2020-11-3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015-0199266	㈜라임푸드	김**	도림북로 12, 1층(도림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2-31	2020-11-30

6. 고 지 사 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 11. 2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0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12. 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11. 16. ~ 2020. 11. 3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20-0202283	딜라잇가든	이**	석산로9번길 76, 1층 101호(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2-31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8-0202475	쿠키나무	이** 외1명	용천로168번길 25, 2층 203호(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2-31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7-0199267	프레시&이지	양**	구월남로 216, 지하1층 비04(일부)호 (구월동, 가나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2-27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7-0200276	찬장	민**	용천로 30,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6-30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203443	카페계절 공간	박**	문화서로28번길 7-12,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7-27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203030	유정식품	이**	문화서로23번길 27, 지하1층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4-21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202023	키키과자점	김**	도림로7번길 7-28, 1층 일부호 (도림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3-26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202755	제이라움	안**	장도로 10, 1층 102호일부호 (논현동, 성화빌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7-15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3-0199165	청룡수산	이**	소래역로 12, 1층 395호 (논현동,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3-15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8-0202889	에이바이트	전**	백범로101번길 32, 1층 일부호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2-14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5-0200219	밥애김	WU****	호구포로 920, 지하1층 B01호 (만수동, 햇빛마을벽산 아파트주상가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8-05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30199087	미스터모리	이**	청능대로 596, 지하1층 (논현동, 푸르지오시티 홈플러스인천논현점 식품부내)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9-14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202994	이끌리에	남**	백범로124번길 7, 나동 1층 120호일부호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7-07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203736	지와사랑 식품사업부	이**	구월로 320, 웰빙플라자 4층 일부호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8-31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6-0199026	악동이네 파이	김**	복개동로66번길 5, 지하1층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7-29	2020-12-0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6-0199707	엄마반찬	이**	서창남순환로 190-17, 1층 101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7단지상가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2-31	2020-12-01

6. 고 지 사 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 11. 3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2020년 11월 1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0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11. 30.
3. **처 분 근 거 법 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 2020. 11. 16. ~ 2020. 11. 3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0199246	비타민하우스 B&G	임○○	장아산로128번길 22-1, 상가동 1층 105호 (서창동, 태평아파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7-01	2020-11-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0199396	아리따움 구월NC	박○○	인하로 485 (구월동, 뉴코아아울렛 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2-28	2020-11-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1-0199864	건강앤다이어트허브나라	김○○	남촌동로15번길 21, 102호 (남촌동, 풍림1차 상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11-20	2020-11-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1-0200081	골든라이프 코리아	정○○	용천로 87 (구월동, 흥인빌딩 204,205,20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12-31	2020-11-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0199552	허브미인	박○○	석산로 194, 1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3-20	2020-11-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6-0199050	㈜제네시스 생명과학	(주)제네시스 생명과학 오○○	에코중앙로156번길 5-26, 3층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9-28	2020-11-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7-0200198	로얄네트몰	㈜로얄네트몰 김○○	용천로115번길 4, 4층 나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6-30	2020-11-30
건강기능식품	2018-0202180	로얄톡톡몰	김○○	용천로115번길 4, 1층 일부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2020-06-30	2020-11-30

일반판매업					폐업(말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2304	케어셀라 구월점	정○○	구월남로 273,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0-31	2020-11-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3068	인평개발건설	배○○	용천로176번길 20, 2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7-20	2020-11-30

6. 고 지 사 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6항에 따라 **2020. 11. 2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2

2020년 11월 1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11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12. 1.
3. 처 분 근 거 법 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11. 16. ~ 2020. 11. 3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9-02033 31	이진만산흑돼지	차O희	선수촌공원로 26, 109호, 110호 (구월동, 두플라스)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 11. 12.	2020. 12. 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 11. 3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6

2020년 11월 1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